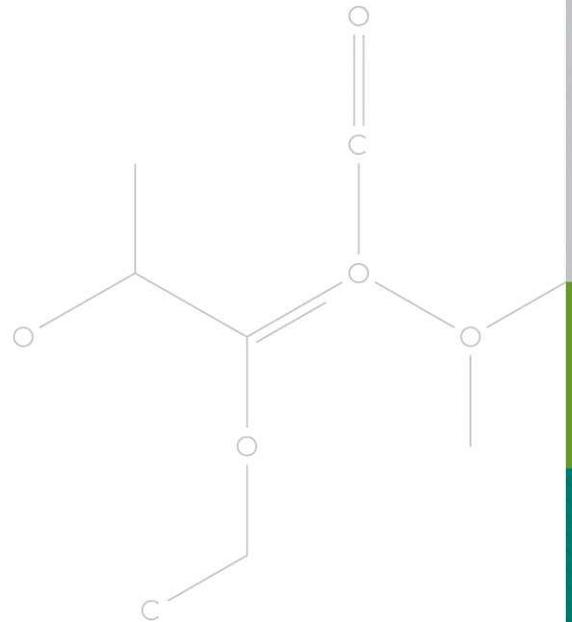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 승인신청 실무가이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실무가이드 | 2020



주의사항

- ❖ 이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다루고 있다.
- ❖ 이 실무가이드는 법적·강제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정보제공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에 관한 기술적 참고자료로서, 법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할 책임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에게 있다.
- ❖ 이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활용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상위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 이 실무가이드의 내용은 향후 법의 개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 등 갱신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 조항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개정이력

목록	주요 개정 내용	발행 시기
초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자료보호 및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 초판발행	2015년 12월
제1차 개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자료보호 및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실무 가이드’로 변경 ○ 실무가이드 개요 및 조항별 해설에 대한 목차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수정]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자료보호 및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에서 자료보호와 정보제공을 분리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만 구성 - [삭제] ‘(기존) 제2장. 화학물질 자료의 보호’ 부분 삭제 - [삭제] ‘(기존) 제4장. 화학물질 정보와 영업비밀’ 부분 삭제 - [분리] ‘(기존) 제3장. 공급망 내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을 ‘제2장.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과 ‘제3장.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으로 분리하여 각 업무별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 전개로 수정 ○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2019년 시행)의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제29조) :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에서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자에게 정보제공으로 변경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제30조) : 제조 등의 보고 및 등록에서 등록 또는 신고로 변경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시행규칙 제35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시행규칙 제38조) : 정보제공 대상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것”으로 변경 	2019년 10월

제2차 개정판

- 자료 제목 변경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실무가이드’에서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 승인신청 실무가이드’로 변경
- 실무가이드 개요 및 조항별 해설에 대한 목차 수정
 - [내용수정]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부분 추가 및 수정
 - [삭제]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정보제공에 관한 안내서’부록 1 하위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부분 삭제
 - [내용수정] (부록) 화학물질 정보제공 Q&A 및 제외대상 심의기준 관련 내용 추가
 - 부록 1. 화학물질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관련 Q&A
 - 부록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영업비밀」 심의기준 해설서
 - 부록 3. 영업비밀에 관한 판례기준 및 영업비밀 관련 사례
-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2021년 시행)의 내용 반영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제29조),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부분 반영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의 승인(시행규칙 제35조의2) : 정보제공 대상 화학물질의 성분 및 함유량을 포함하지 않으려면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신청을 해야 함

2020년
12월

「 목 차 」

제1장 개 요	11
1.1 발간목적	12
1.2 활용방안	13
1.3 용어 정의	15
1.4 화학물질 정보제공 제도의 이해	16
제2장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22
2.1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24
2.2 정보제공 범위 및 내용	27
2.3 양도자의 정보제공 시기 및 절차	32
2.4 양도자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및 사례	37
2.5 벌칙	67
제3장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68
3.1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70
3.2 정보제공 범위 및 내용	71
3.3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시기 및 절차	74
3.4 하위사용자 등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및 사례	78
3.5 벌칙	83
제4장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84
4.1 승인신청 대상 및 주체	86
4.2 승인신청 절차	88
4.3 승인의 특례	90
4.4 승인신청서류 작성방법 및 사례	92

부록	117
부록.1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관련 Q&A	118
부록.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영업비밀」승인 심의기준 해설서	125
부록.3 영업비밀에 관한 판례 기준 및 영업비밀 관련 판례	141

「 표 목 차 」

<표 1> 주요용어 정의	15
<표 2>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18
<표 3>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18
<표 4>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대상	25
<표 5>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주체 및 이행사항	26
<표 6> 화학물질 양도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27
<표 7>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변경사항	29
<표 8> 화학물질안전정보 구성	30
<표 9> 정보제공 주체별 화학물질안전정보 수집 방법	33
<표 10> 화학물질안전정보(제공자) 작성방법	37
<표 11> 화학물질안전정보(물질정보) 작성방법	37
<표 12> 화학물질안전정보(물리적·화학적 특성) 작성방법	38
<표 13> 화학물질안전정보(분류표시 정보) 작성방법	39
<표 14> 화학물질안전정보(유해성 정보) 작성방법	40
<표 15> 화학물질안전정보(노출기준) 작성방법	43
<표 16> 화학물질안전정보(취급방법) 작성방법	44
<표 17> 화학물질안전정보(화재 시 대처방법) 작성방법	46
<표 18> 화학물질안전정보(누출 시 방제요령) 작성방법	47
<표 19> 화학물질안전정보(폐기방법) 작성방법	48
<표 20> 화학물질안전정보(유해화학물질 등 정보) 작성방법	49
<표 21>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 정보) 작성방법	49
<표 22> 화학물질안전정보(관련 법령규제 정보) 작성방법	52
<표 23> 화학물질안전정보(참고자료) 작성방법	53
<표 24> 별지 제25호서식 작성 예시	54
<표 25>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관련 벌칙 및 과태료	67
<표 26> 화학물질 하위사용자·판매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71
<표 27>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71
<표 28> 화학물질안전정보 구성	73

<표 29> 등록 또는 신고대상 화학물질에 따른 하위사용자 제공 정보	75
<표 30> 화학물질안전정보(제공자) 작성방법	78
<표 31> 화학물질안전정보(물질정보) 작성방법	78
<표 32> 화학물질안전정보(안전정보) 작성방법	79
<표 33>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관련 벌칙	83
<표 34> 영업비밀 요건의 세부 내용	86
<표 35>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2021.1.16. 시행) 전·후 비교	87
<표 36>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92
<표 37> 화학물질안전정보(승인신청 목록) 작성방법	94
<표 38>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작성방법	96

「그림 목 차」

<그림 1> 화학물질의 유통 흐름	16
<그림 2> 화학물질 정보제공 흐름별 가이드 참고 부분	17
<그림 3>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공급망 내 정보제공 개요	19
<그림 4> 화학물질 정보제공(제조·수입자 →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19
<그림 5> 화학물질 정보제공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N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20
<그림 6> 화학물질 정보제공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 제조·수입자)	20
<그림 7> 화학물질 정보제공 (N차 하위사용자 → 1차 하위사용자)	20
<그림 8> 이의신청 처리절차	21
<그림 9>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23
<그림 10> 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내용	28
<그림 11>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절차	32
<그림 12> 화학물질 정보제공 대상 여부 확인 절차	33
<그림 13> 양도자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36
<그림 14>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69
<그림 15> 화학물질 정보제공 주체	70
<그림 16>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자·수입자 상호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72
<그림 17>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절차	74
<그림 18>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자·수입자 상호 간 화학물질 정보제공	75
<그림 19> 화학물질 유통 공급망 내 등록·신고를 위한 하위사용자 정보제공 개요 ·	77
<그림 20>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 승인신청	85
<그림 2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절차	89
<그림 2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93
<그림 2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기재사항	95
<그림 24>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기재사항	98

실무가이드 구성

목차		키워드	페이지	비고
개요	용어 정의	#화학물질, #혼합물, #하위사용자	p.5	법 제2조
	화학물질 정보제공 제도의 이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정보제공	p.6	법 제29조, 제30조
양도자 정보제공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양도자, #등록, #신고	p.15	법 제29조
	정보제공 범위 및 내용	#화학물질안전정보	p.19	법 제29조, 규칙 제35조 시행령 제20조의2
	양도자의 정보제공 시기 및 절차	#양도 전, #양도와 동시	p.24	규칙 제36조
	양도자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및 사례 별치	#별지 제25호서식, 제26호서식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p.29 p.61	규칙 제35조, 제36조 법 제52조, 제54조
하위 사용자 정보제공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하위사용자,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	p.64	법 제30조
	정보제공 범위 및 내용	#화학물질안전정보	p.65	법 제30조, 규칙 제38조
	하위사용자의 정보제공 시기 및 절차	#요청시	p.68	법 제30조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및 사례 별치	#별지 제27호서식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p.72 p.77	규칙 제38조, 39조 법 제52조, 제54조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범위 승인 신청	승인신청 대상 및 주체	#하위사용자,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	p.80	규칙 제35조의2
	승인신청 절차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p.82	규칙 제35조의2
	승인의 특례	#안전정보 제공 전	p.84	규칙 제35조의2
	승인신청서류 작성방법 및 사례	#별지 서식	p.86	규칙 제35조의2
부록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관련 Q&A	#하위사용자,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	p.11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승인 「영업비밀」 심의기준 해설서	#영업비밀심의기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p.118	규칙 제35조의2 고시 제2020-230호
	영업비밀에 관한 판례 기준 및 영업비밀 판례 사례	#영업비밀 판례	p.134	규칙 제35조의2

제1장 개 요

1.1. 발간목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화학물질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여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학물질 취급자가 해당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의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에게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는 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공급망 내에서 화학물질 정보요청 시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등록과 신고의 의무에 관한 법률로만 인식하고 있고, 해당 의무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을 구분하여 제공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주체, 내용, 시기 및 절차, 작성방법과 사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범위 승인신청 제도 도입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방법, 사례, 심의 기준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본 실무가이드 작성 및 배포의 목적은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주체임을 인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2) 화학물질 정보제공 관련 상세내용과 업무를 안내하여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의 승인업무에 관련한 안내를 위함이다.

1.2. 활용방안

본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과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보제공 주체, 내용, 시기 및 절차, 작성방법 및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실무가이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화학물질 취급자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정보제공 대상 주체인지를 확인
-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주체, 대상, 내용, 시기 및 절차, 작성방법 및 사례 확인
-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주체, 대상, 내용, 시기 및 절차, 작성방법 및 사례 확인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신청과 심의 기준에 관한 내용 확인

본 실무가이드는 아래와 같은 법 및 하위법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9호, 2020. 7. 14., 일부개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0. 12. 17.] [환경부령 제896호, 2020. 12. 17., 일부개정]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6.] [환경부고시 제2020-230호, 2020. 11. 9., 제정.]
-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37호, 2018. 12. 28., 일부개정]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2. 8.] [고시 제2019-4호, 2019. 2. 8., 일부개정]

따라서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법의 개정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의 개정 이전까지는 유효하나 이후에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실무가이드에서는 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은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 실무가이드(환경부)」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문의 내용은 화학물질 정보제공에 관한 참고자료로 법적·강제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정보제공 대상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업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활용되어야 한다.

1.3. 용어 정의

○ 법 제2조(정의) 등에 근거하여 본 가이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아래에 정리함(<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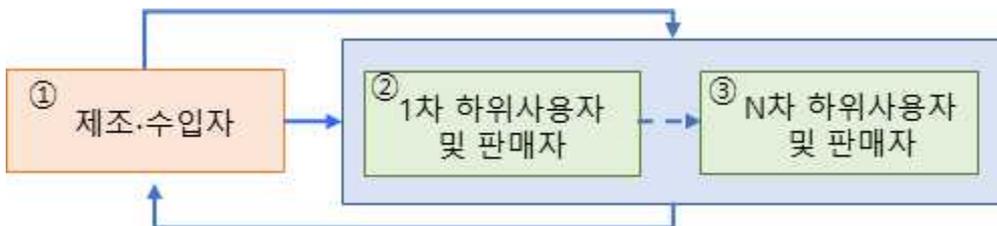
<표 1> 주요용어 정의

용어	법적근거	정의
화학물질	제2조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혼합물	제2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유해화학물질	제2조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유해성	제2조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위해성	제2조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총칭명 (總稱名)	제2조제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사업자	제2조제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품	제2조제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하위사용자	제2조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판매	제2조제1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화학물질 정보제공 제도의 이해

화학물질 정보제공 의무사항

- 공급망 내 화학물질 유통 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발생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따라 등록, 신고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에 따라 공급망 내 상호 요청 시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
- 화학물질 유통 흐름은 <그림 1>과 같으며, 화학물질 취급형태별로 정보제공 내용 및 방법 등을 확인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예를 들어 ② 1차 하위사용자의 경우, ① 제조·수입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급망 내 ③ N차 하위사용자에는 화학물질 양도자로서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따라서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통구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주체를 확인하여 대응 필요



<그림 1> 화학물질의 유통 흐름

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정보제공의 흐름

- 화학물질 정보제공은 화학물질 취급형태별로 다양
 - 화학물질의 유통 흐름(그림 1)을 참고하여 어떤 화학물질 취급자에 해당하고, 어떠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



<그림 2> 화학물질 정보제공 흐름별 가이드 참고 부분

공급망 상 화학물질 정보제공 주체의 구분 및 예시

- 유통망에서의 정보제공 흐름에 따른 정보제공 주체
 - 화학물질의 유통구조 상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 정보제공의 주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자는 화학물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별지제25호서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와 별지 제26호서식)를 제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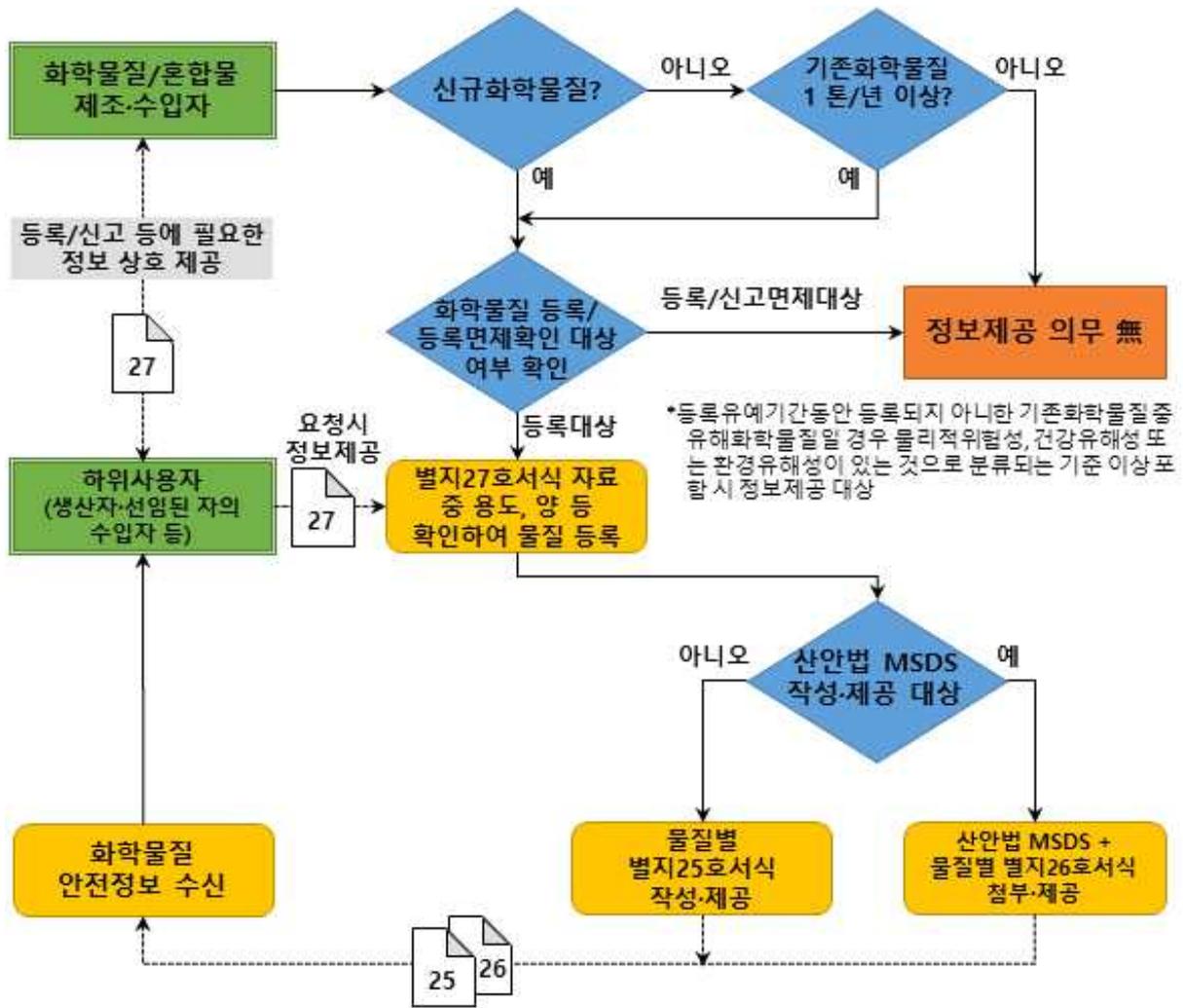
〈표 2〉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정보제공 흐름	작성자 (정보제공 작성자)	전달자 (정보제공 전달자)	양수자 (정보제공 받는자)
제조·수입자가 하위사용자에게 양도 시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공급망 내 상위사용자가 하위사용자에게 양도 시 <p>※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는 제조수입자에게 화학물질 정보를 전달받아 2차(N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에게 전달</p>	제조·수입자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2차(N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및 규칙 제38조, 제39조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자료 작성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물질을 구매하는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여야 함
-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요청시,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표 3〉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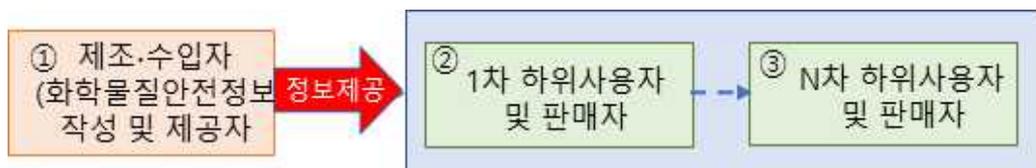
정보제공 흐름	작성자 (정보제공 작성자)	전달자 (정보제공 전달자)	양수자 (정보제공 받는자)
제조·수입자가 하위사용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시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제조·수입자
공급망 내 상위사용자가 하위사용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시 <p>※ 제조수입자가 물질등록을 위해 모든 하위사용자의 용도 등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는 2차(N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의 정보를 제조수입자에게 전달</p>	2차(N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제조·수입자



〈그림 3〉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공급망 내 정보제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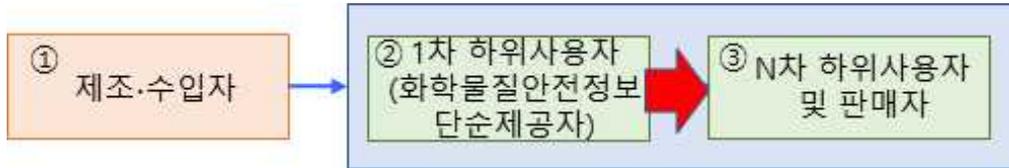
○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가이드 제2장)

- ① 제조·수입자가 하위사용자(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원료로 사용·소비) 및 판매자에게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을 양도 시, 등록·신고된 화학물질 또는 등록유예기간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분류 함량 기준 이상 포함)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별지 제25호서식 또는 MSDS와 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공



〈그림 4〉 화학물질 정보제공(제조·수입자 →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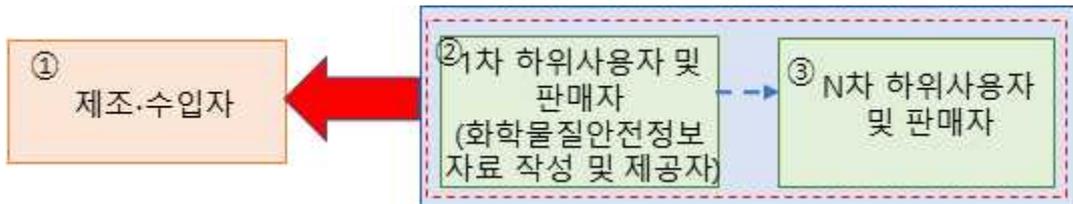
- ②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가 ③ N차 하위사용자(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원료로 사용·소비) 및 판매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 시, 등록·신고된 화학물질 또는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분류 함량 기준 이상 포함)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별지 제25호서식 또는 MSDS와 별지 제26호서식)를 제조·수입자에게 전달받아 제공



<그림 5> 화학물질 정보제공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N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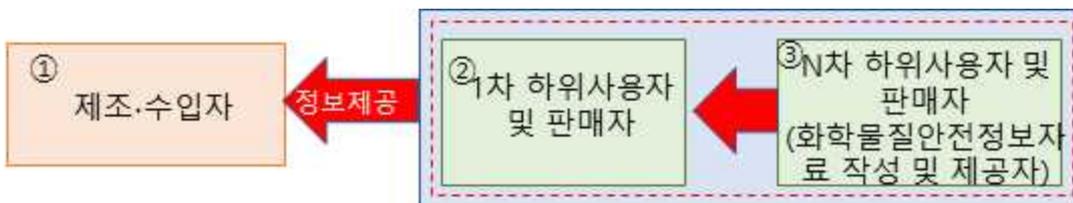
○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가이드 제3장)

- ① 제조·수입자가 ②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에게 등록·신고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②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는 ① 제조·수입자에게 화학물질 안전정보자료(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공



<그림 6> 화학물질 정보제공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 제조·수입자)

- ②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가 ③ N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에게 ·신고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③ N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는 ② 1차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에게 화학물질 안전정보자료(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공



<그림 7> 화학물질 정보제공 (N차 하위사용자 → 1차 하위사용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사항 (가이드 제4장)

- 화학물질등록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위해성 정보, 안전사용 정보 등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함
-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제도 시행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요건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승인 요건인 비공시성·경제성·비밀관리성·유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환경부고시 제2020-239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21.1.16)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 후 영업비밀로 인정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 제출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처리기관 : 환경부, 정보제공심의위원회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불승인에 따른 이의신청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 내용과 사유를 별지에 작성



<그림 8> 이의신청 처리절차

제2장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1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함유된 혼합물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규칙 [별표 7]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 함유되었을 경우)
- 다만,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
-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래의 경우 해당 시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제4장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범위 승인신청”참고)
 -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 본 장에서는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정보제공 내용,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설명



<그림 9>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2.1.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정보제공 대상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라 연간 100 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중 실제 등록이 완료된 물질은 등록 결정이 통지된 이후부터 정보제공 대상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중 실제 신고 완료된 물질은 신고 결정이 통지된 이후부터 정보제공 대상
 -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 신규화학물질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중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환경부고시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동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중 실제 등록이 완료된 물질은 등록 결정이 통지된 이후부터 정보제공 대상
 -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 자체의 정보가 아닌 등록 또는 신고된 개별 물질의 정보를 제공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제공 대상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 자체의 정보가 아닌 개별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 단, 유해화학물질은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경우로 한정
- *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내 혼합물 분류 시 고려해야 하는 건강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 한계농도 참고

〈표 4〉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대상

대상	의미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또는 신고대상 화학물질 중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물 내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로서 등록대상이지만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물 내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로서 등록대상이지만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물질 중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함량 기준 이상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

정보제공 주체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표 5〉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주체 및 이행사항

주체	의미	이행사항
화학물질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화학적 합성 등을 통해 제3의 물질을 만드는 자 • 양도자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 화학물질) 화학물질안전 정보를 작성하여 양수자에게 정보제공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 양도자 또는 양수자 (선임자가 등록한 경우) 	
혼합물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반응 없이 2종 이상의 단일 물질을 단순 혼합하여 혼합물을 생산하는 자 • 양도자 또는 양수자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 화학물질) 상위공급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는 하위사용자에게 정보제공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판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양도자 또는 양수자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수입자를 같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 양도자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 화학물질) 화학물질안전 정보를 작성하여 양수자에게 정보제공

2.2. 정보제공 범위 및 내용

정보제공 범위

○ 화학물질 양도자 정보제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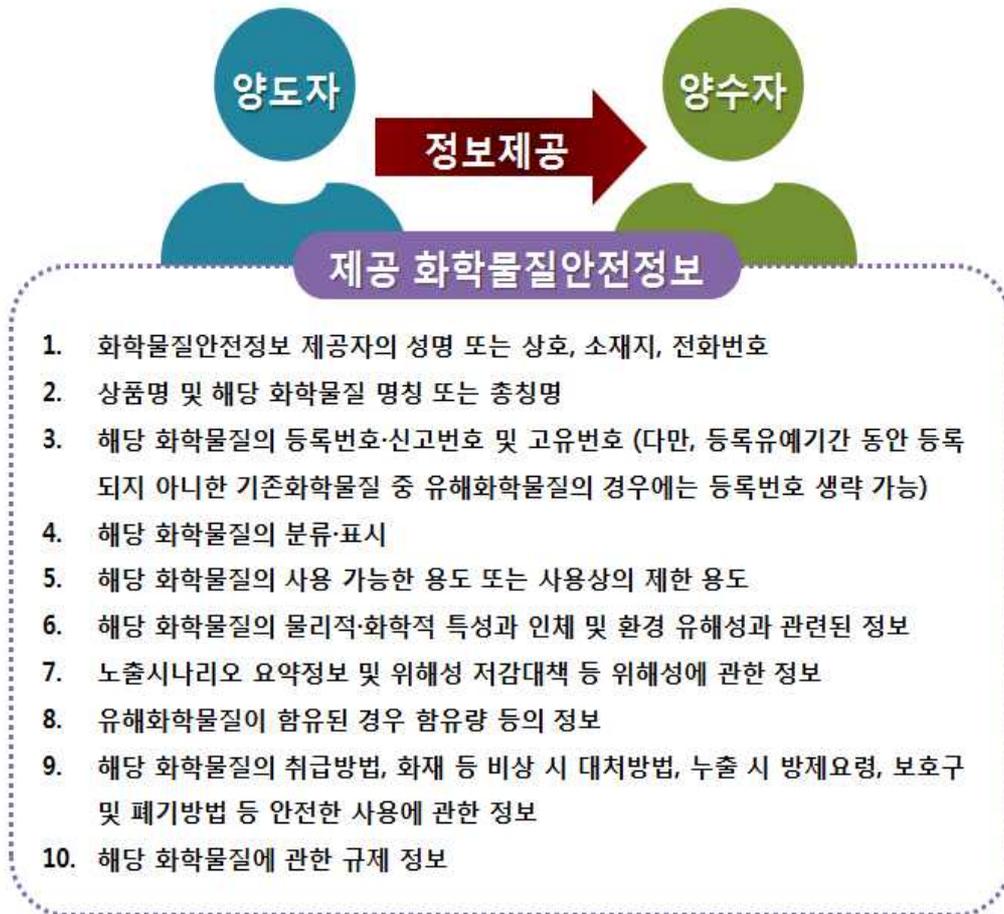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표 6> 화학물질 양도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번호	화학물질안전정보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 생략 가능)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그림 10> 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내용

○ 영업비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미포함 가능

-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제공 대상(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승인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시행규칙 [별표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기준 이상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용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정보제공자 또는 제공받은 자가 상호 간에 알려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변경사항(시행규칙 제37조)

<표 7>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변경사항

번호	변경사항	근거조항
1	유해성심사 결과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18조제1항
2	위해성평가 결과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24조제1항
3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제29조제1항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

정보제공 내용

- 화학물질안전정보는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로 구성

<표 8> 화학물질안전정보 구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1. 제공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2. 물질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등록·신고번호(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유해화학물질(함유) 여부
3. 안전정보	분류·표시, 저장·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	
1. 물질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등록·신고번호(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상세기술)
2. 물리적·화학적 특성	성상,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물용해도, 기타
3. 분류표시 정보	물리적 위험성/건강 유해성/환경 유해성에 따른 유해성분류(항목, 구분) 및 표시사항(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4. 유해성 정보	인체유해성(급성독성,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기타) 환경유해성(수생생물독성, 육상생물독성, 분해성, 기타), 물리적위험성
5. 노출기준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6. 취급방법	저장 및 보관방법, 취급 시 주의사항(사고예방법),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7. 화재 시 대처방법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소화제 및 소화장비(보호구 등)
8. 누출 시 방제요령	주의사항,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9. 폐기방법	폐기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10. 유해화학물질 함유 정보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및 규제내용
11. 위해성 정보 (용도별 위해성정보 기재)	<p>용도기술(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p> <p>제조공정 기술(작업조건) :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p> <p>위해성 저감조치 :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p> <p>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p>
12. 관련 법령 규제 정보	-
13. 참고자료	-

○ 추가적인 정보제공 사항

- 화학물질의 양도자 및 등록자가 제공한 화학물질안전정보가 실제 하위사용자의 사용조건 및 화학물질 용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업자 노출평가에 필요한 노출변수를 조절하여 하위사용자의 운전조건 및 위해성 정보상의 위해관리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하위사용자의 화학물질의 노출시간 단축, 공정작업 개선, 사용량 감축 등 효율적으로 위해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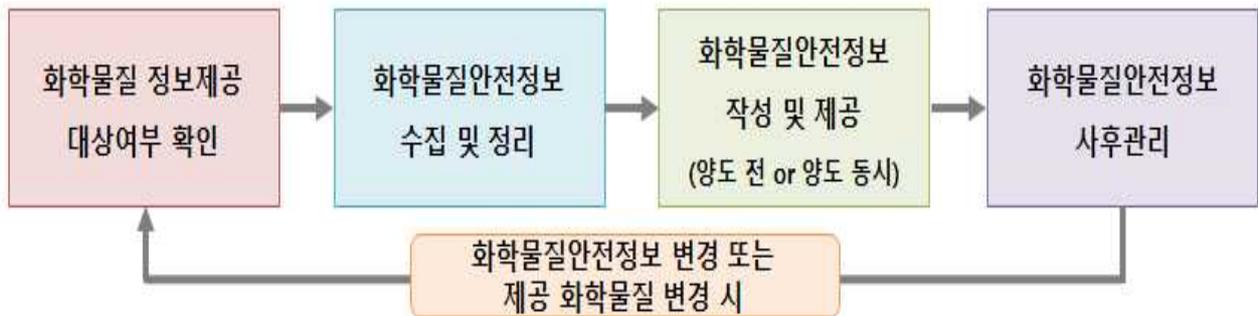
2.3. 양도자의 정보제공 시기 및 절차

정보제공 시기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항에 따라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양도 때에만 제공할 수 있음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제공

정보제공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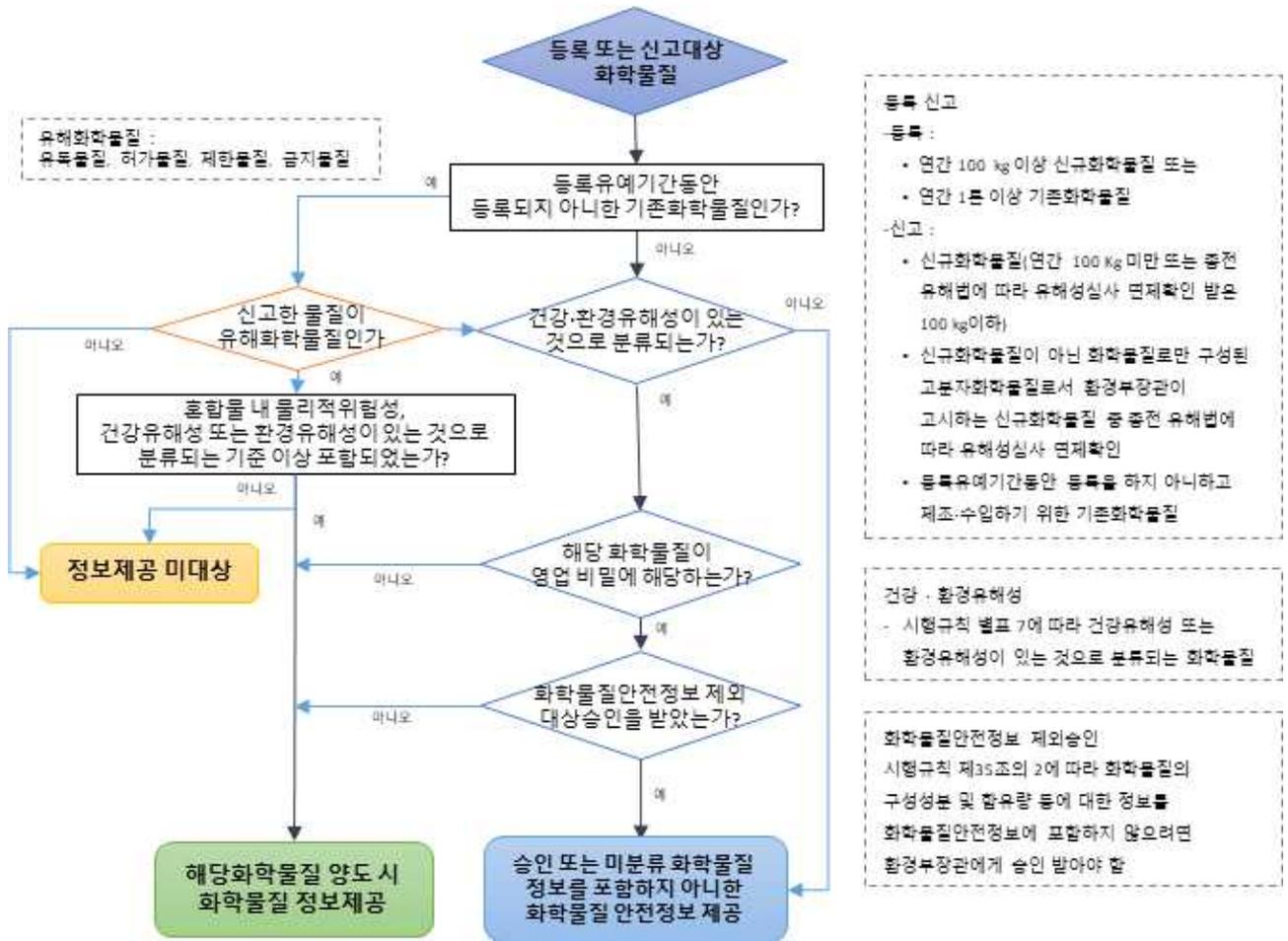
- 화학물질(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양도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해당 화학물질 양수자에게 양도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그림 11>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절차

1) 화학물질 정보제공 대상여부 확인

- 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제공 대상 해당 여부를 아래 절차로 판단



<그림 12> 화학물질 정보제공 대상 여부 확인 절차

2) 화학물질안전정보 수집 및 정리

- 제공해야 할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수집 및 정리

<표 9> 정보제공 주체별 화학물질안전정보 수집 방법

정보제공 주체	화학물질안전정보 수집 방법
화학물질 제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 : 등록 또는 신고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직접 작성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직접 작성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또는 신고한 화학물질 : 등록 또는 신고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직접 작성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 주체	화학물질안전정보 수집 방법
	<p>: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출자(또는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p>
혼합물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 내수 구매일 경우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수입일 경우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 내수 구매일 경우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수입일 경우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출자(또는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판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직접 작성 - 혼합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내수 구매는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수입은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출자(또는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 - 화학물질 내수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직접 작성 - 화학물질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 - 혼합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내수 구매는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수입은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 - 화학물질 내수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 등록 또는 신고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직접 작성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을 요청하여 수집

3)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 및 제공

- 해당 화학물질 양수자에게 양도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또는 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에 수집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작성

4) 화학물질안전정보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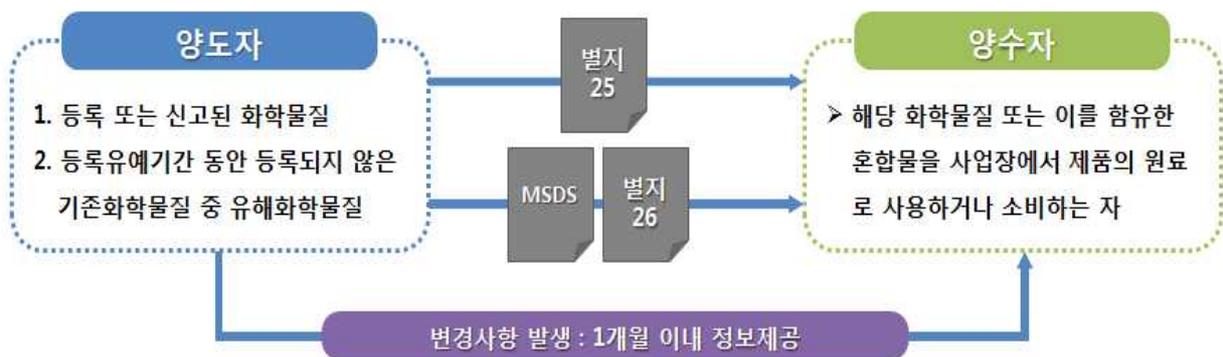
- 제공한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자에게 제공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 양도 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정보제공 방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정보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를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용도, 물리화학적 특성, 분류표시, 위해성정보, 노출기준, 취급정보, 화재시대처방법, 누출시 방제요령, 폐기방법, 유해화학물질 등 정보를 작성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등록번호, 용도,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작성 및 첨부하여 제공
 - 다만,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별지 제26호 서식의 위해성정보란에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제공
 - 또한, 위해성정보란에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그 외의 내용(등록·신고번호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별지 제26호 서식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음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한계함량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0톤 미만으로 등록하여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의2 가호에 따라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 시행규칙 [별표7] 제3호에 따른 건강유해성 및 제4호에 따른 환경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시행규칙 [별표7] 제4호 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구분 3 또는 만성구분 4로만 분류되고 그 밖의 건강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동일한 화학물질(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최초 1회 정보 제공

<그림 13> 양도자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2.4. 양도자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및 사례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 제공자 작성방법

- 모든 내용은 등록 통지된 내용 또는 등록서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함*

* 시행규칙 제35조제3항(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또는 등록 후 통지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함
- 위해성자료가 공동 제출되었을 경우, 위해성 자료에는 공동제출한 회원사의 용도와 노출정보가 취합되어 평가되었으므로 해당 업체가 등록한 용도 및 그 노출정보에 대해서만 작성하여야 함

예) 공동제출된 위해성 자료에서 평가된 용도는 9. 세정 및 세척제(반도체 세정용), 33. 중간체(고무, 섬유, 수지 합성 원료) 이나, 해당 업체가 등록 시 “9. 세정 및 세척제(반도체 세정용)”만 등록했을 경우 → 이 용도에 대해 평가된 정보로만 “11. 위해성정보” 작성

<표 10> 화학물질안전정보(제공자)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제공자	상호(명칭)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상호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 제공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성명(대표자)	• 제공기업의 대표자 성명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작성
	소재지(사업장)	• 제공기업의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물질정보 작성방법

- 법 제14조제1항 등록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중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관련

<표 11> 화학물질안전정보(물질정보)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물질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 해당 화학물질명(총칭명) 작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고유번호(CAS No.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 작성(등록·신고 통지서 참고)
	상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화학물질이 함유된 상품명 작성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등록·신고통지서 참고하여 작성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상세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록·신고 신청 시 작성된 용도 및 구체적 용도를 참고하여 작성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제시되어 있는 55개의 화학물질 용도 분류체계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용도 작성 위해성 자료가 제출된 경우 위해성 자료에서 확인된 용도와 일치해야 함

○ 물리·화학적 특성 작성방법

- 법 제14조제1항제5호 등록등 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관련)

<표 12> 화학물질안전정보(물리적·화학적 특성)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물리적· 화학적 특성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상태(고체, 액체, 가스), 색상 및 냄새 작성 (예시) 무색의 방향족 냄새가 나는 액체
	녹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시험조건이 확인된 경우, 시험조건도 함께 작성 등록·신고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 (예시) 녹는점 : 5.5℃, 끓는점 : 80.1℃, 증기압 : 94.8mmHg, 인화점 : -11℃ (closed cup),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 2.13, 물용해도 :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1,790mg/L(25℃)
	물용해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고 신청 시 제출한 정보 중 주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작성 (밀도, 입도분석, 점도, 해리상수 등) • (예시) 점도 : 0.60 mPa.s(25℃)

○ 분류·표시 정보 작성방법

- 법 제14조제1항 등록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중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표 13> 화학물질안전정보(분류표시 정보)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분류표시 정보	물리적 위험성/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에 따른 유해성분류(항목, 구분) 및 표시사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위험성과 관련된 적절한 경고 정보작성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된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작성 •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결과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해 유해성 항목별로 분류하여 분류표시정보를 작성 • 등록·신고하여 통지된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 • 물리·화학적, 인체 건강 및 환경 영향과 관련한 주요한 유해 영향은 화학물질 안전 정보에 작성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정보와 일치해야 함 • 분류·표시 정보가 없는 유해성·위험성 항목은 작성하지 않음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유해성 분류</th> <th colspan="3">표시사항</th> </tr> <tr> <th>항목</th> <th>구분</th> <th>그림문자</th> <th>신호어</th> <th>유해·위험 문구</th> </tr> </thead> <tbody> <tr> <td>물리적 위험성</td> <td>인화성 액체</td> <td>2</td> <td rowspan="10"> </td> <td rowspan="10">위험</td> <td>H225</td> </tr> <tr> <td rowspan="7">건강 유해성</td> <td>급성 독성-경구</td> <td>4</td> <td>H302</td> </tr> <tr> <td>피부 부식성/자극성</td> <td>2</td> <td>H315</td> </tr> <tr> <td>심한 눈 손상/자극성</td> <td>2</td> <td>H319</td> </tr> <tr> <td>생식세포 변이원성</td> <td>1</td> <td>H340</td> </tr> <tr> <td>발암성</td> <td>1</td> <td>H350</td> </tr> <tr> <td>표적장기-반복노출</td> <td>1</td> <td>H372</td> </tr> <tr> <td>흡인유해성</td> <td>1</td> <td>H304</td> </tr> <tr> <td>환경 유해성</td> <td>수생환경유해성-만성</td> <td>3</td> <td>H412</td> </tr> </tbody> </table>	구분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액체	2		위험	H225	건강 유해성	급성 독성-경구	4	H302	피부 부식성/자극성	2	H315	심한 눈 손상/자극성	2	H319	생식세포 변이원성	1	H340	발암성	1	H350	표적장기-반복노출	1	H372	흡인유해성	1	H304	환경 유해성	수생환경유해성-만성	3	H412	
구분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액체	2		위험	H225																																								
건강 유해성	급성 독성-경구	4			H302																																								
	피부 부식성/자극성	2			H315																																								
	심한 눈 손상/자극성	2			H319																																								
	생식세포 변이원성	1			H340																																								
	발암성	1			H350																																								
	표적장기-반복노출	1			H372																																								
	흡인유해성	1			H304																																								
환경 유해성	수생환경유해성-만성	3			H412																																								

○ 유해성 정보 작성방법

- 법 제14조제1항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중 “6.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표 14> 화학물질안전정보(유해성 정보)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정보를 작성 • 시험방법, 시험종, 노출경로, 영향용량, 노출기간, 결과 등을 작성 • 등록 및 위해성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일치해야 함
유해성 정보 (인체 유해성)	급성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화학물질을 시험동물에 일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 투여(처리)하거나, 흡입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24시간이 넘지 않는 제한된 시간 동안 시험동물에 1회 노출시켰을 때 단기간(1~2주)내에 나타나는 독성 • 시험종 별로 노출경로(경구, 경피, 흡입)에 따라 반수치사량(농도)(LD₅₀, LC₅₀) 값을 작성 • (예시) 경구 : 930mg/kg(LD₅₀, rat), 경피 : 48 mg/kg (LD₅₀, mouse), 흡입 : 44.5mg /L/4hr(LC₅₀, rat)
	자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화학물질이 일시적 접촉, 또는 장기간이나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피부, 눈 또는 호흡기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생물학적 조직을 파괴하는 증상으로 노출경로에 따라 피부 부식성/자극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p>심한 눈손상/자극성으로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및 눈에 접촉하였을 경우 자극성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예시) 피부 : 보통자극성[Standard Draize test], 20 mg/24hr(토끼), 눈 : 보통자극성[Standard Draize test], 88mg(rabbit)
	과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화학물질에 대해 면역학적으로 매개되어 나타나는 반응으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경로에 따라 피부과민성 및 호흡기 과민성으로 구분 • 피부 및 호흡기 과민성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예시) 피부과민성 : 없음, 호흡기 과민성 : 없음
	유전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담체인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검사 • 복귀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에 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에 관한 정보 작성 • (예시) 양성 : 생체외(in vitro) 시험(Ames 시험 등), 양성 : 생체내(in vivo) 시험(소핵시험, 랫드, 흡입)
	반복투여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시험동물에 1개월 내지 3개월간 거의 매일 반복투여 또는 노출된 결과로 인해 시험동물에 일어나는 독성학적 영향 • 노출기간에 따라 아급성독성(28일), 아만성독성(90일)으로 구분하여 작성 • (예시) 아만성독성(90일) : Rat을 대상으로 한 흡입 시험에서 임상적 또는 체중 변화가 있음, 고농도에서는 백혈구가 감소, 암컷에서는 갑상선 무게가 증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등 등록 신청시 제출한 정보 중 주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작성 • (예시) 발암성 : 발암성 있음, 흡인유해성 : 직접적 흡인 시 폐부종과 출혈이 발생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유해성 정보 (환경 유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었을 경우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작성 • 신뢰도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시험종, 매체, 단위, 시험기간 및 시험조건 등을 작성 • 등록 및 유해성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일치해야 함
	수생 생물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화학물질이 수생생물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독성 • 수생생물(어류, 갑각류 및 조류)에 대해 급성(LC₅₀, EC₅₀) 및 만성 독성 정보를 작성 • (예시) 어류(LC₅₀) : <i>Oncorhynchus mykiss</i>, 5.3 mg/L/96hr, 갑각류(EC₅₀) : <i>Daphnia magna</i>, 20.6mg/L/48hr, 조류(EC₅₀) : <i>Chlorella vulgaris</i>, 312 mg/L/72hr
	육상 생물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화학물질이 육상생물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독성 • 육상생물(식물, 무척추동물(예 : 지렁이, 거미 등)에 대해 급성 및 만성 독성 정보를 작성 • (예시) 식물(EC₅₀) : <i>Lactuca sativa</i>, >1 mol/m³/3day, 지렁이(LC₅₀) : <i>Eisenia foetida</i>, 0.1-1 mg/cm²/48hr
	분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화학물질이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조건 하에서 물질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 본래의 구조가 분해되거나 화학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 • 이분해성(Ready biodegradability), 본질적분해성(Inherent biodegradability) 및 가수분해(hydrolysis) 등 분해성 관련 정보가 확인되면 작성 • (예시) 이분해성 : 활성슬러지, 14일 후에 100% 분해됨(호기성, OECD TG 301), 본질적분해성 : 활성슬러지, 14일 후에 80% 분해됨(호기성, OECD TG 302), 가수분해 : 가수분해 작용그룹의 부재로 인해 가수분해는 일어나지 않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유해성과 관련된 주요 정보(축적성 및 잔류성 등)가 확인되면 작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축적성 : BCF=24~30 (어류나 수생생물에 생물농축이 일어나지 않음), 잔류성 : 반감기(대기 : 13일)
유해성 정보 (물리적 위험성)	물리적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에 관한 정보를 작성 등록 및 유해성 자료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일치해야 함 (예시) 폭발성 : 화염이 있을 경우 폭발성 있음, 인화성 : 인화성 있음, 산화성 : 산화성 없음

○ 노출기준 작성방법

<표 15> 화학물질안전정보(노출기준)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노출기준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p>(정의)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p> <p>1일 작업시간 동안의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 (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 (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 (Ceiling, C)에 대한 정보를 작성</p> <p>(예시) 국내(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TWA : 1ppm(3mg/m³), STEL : 5ppm(16mg/m³)), 국외 (ACGIH-TLV, TWA : 0.5ppm, STEL : 2.5ppm / NIOSH-REL, TWA : 0.1ppm(10시간), STEL : 1ppm / OSHA-PEL, TWA : 1ppm, STEL : 5ppm)</p>

○ 취급방법 작성방법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서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중 “1. 취급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내용을 기초로 작성

<표 16> 화학물질안전정보(취급방법)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취급방법 ⁽¹⁾	저장 및 보관방법	<p>1) (저장공간 및 저장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저장공간, 적절한 재질·모양(형태)의 저장용기, 환기시설 등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보관, 서늘한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작업장에 환기 및 배출 시설을 확인
		<p>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혼재 저장·보관 금지물질 작성,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으로 저장·보관 유의사항 작성, 해당 물질과 반응 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분해 생성물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 식품, 사료, 의약품과 혼합저장 금지, 환원되거나 쉽게 산화되는 물질이므로 산화제와 격리하여 보관, 강염기류 칼륨과 함께 저장 금지,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열원, 산화제, 불꽃, 가연성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
		<p>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보관 조건) 온도, 습도, 직사광선, 점화원, 흡연 등 저장·보관 시 주의해야 할 조건 등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서늘한 온도에서 저장, 항상 35℃ 이하에서 저장, 공기, 습기 및 빛에 민감하므로 주의하여 저장
		<p>4) (정전기 방지 조치) 저장·보관 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작성</p>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정전하를 분산시키기 위해 액체 운반을 수반하는 장비는 땅에 접지시킴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 예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고예방 정보) 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 에어로졸 및 분진 발생 예방대책, 환경으로의 배출 감소 대책 등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빈 용기를 가압, 절단, 용접, 납땜, 연마, 천공을 해서는 안되며 열, 스파크, 화염에 노출 금지 2)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취급자를 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보호장갑으로 폴리우레탄 재질은 사용금지,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 보호구 착용 3) (기타) 일반적인 작업장 위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작업장 내 음식섭취 금지, 금연, 작업 후 손 깨끗하게 씻기, 오염된 옷 및 보호구 탈의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 노출경로별(흡입, 피부, 눈 및 경구)로 응급조치와 관련된 정보작성 • 중요한 증상 및 영향, 노출 후 급성 및 지연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작성 • 현장에서 작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 작성 • (예시) 유해물질을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mouth-to-mouth)을 사용하지 말고, 호흡용 기구를 이용, 유해물질이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고 오염물이 피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함

(1) 취급방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취급방법 참고

○ 화재 시 대처방법 작성방법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서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중 “2.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내용을 기초로 작성

<표 17> 화학물질안전정보(화재 시 대처방법)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화재 시 대처방법 ⁽²⁾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1)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 화재 진압시 착용할 적절한 보호구 작성 - (예시) NIOSH/OSHA에서 인증한 자급식 공기호흡기 및 전신 보호복 착용, 자급식 공기호흡기 착용 2)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유해화학물질 등)) 화재 진압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물질이 연소할 때 형성되는 물질을 작성 - (예시) 화재 시 일산화탄소와 같은 자극적이고 부식성이 강한 독성기체 발생 가능, 연소 시 황·질소산화물 형성 가능,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적인 혼합물 형성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1) (적절한 소화제) 화재진압 시 화재의 종류 및 상황에 적합한 소화제 정보 작성 - (예시) 화재가 발생하면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진화, 폼,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스프레이 또는 안개분무를 사용 2)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소화제 사용 시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반응으로 인해 잠재적인 유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작성 - (예시)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및 독성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 사용금지, 일부 물질은 물과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음

(2) 화재 시 대처방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 2.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참고

○ 누출 시 방제요령 작성방법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서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중 “3. 누출 시 방제요령”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내용을 기초로 작성

〈표 18〉 화학물질안전정보(누출 시 방제요령)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³⁾	주의사항	<p>1) (예방조치 :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보호구(개인 보호구 포함)를 제시, 위험지역에서 대피를 위한 비상절차를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긴팔 셔츠와 긴 바지, 양말과 함께 신발을 착용, 화학물질용 고글과 안면섉�드(face shield)를 착용, 피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 장화와 장갑을 포함한 완전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 증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공인된 호흡보호구를 사용, 비정상적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공정에 노출되는 경우 화학물질 안전용 고글 및 승인된 호흡보호구를 착용 <p>2) (예방조치 : 배수시설,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 유출 및 누출사고가 났을 경우 환경 예방조치 및 사전예방 조치를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유출물이 하수구나 배수구를 통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수로, 하수구, 지하실 또는 밀폐된 장소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오염 지역을 다량의 물로 세척, 누출지역을 적어도 반경 50-100m까지 차단, 즉시 사전예방조치로 누출 또는 유출 지점으로부터 최소 반경 100m 지역을 격리, 대량유출 시 풍하 방향으로 최소 800m의 초기 대피를 고려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방법 등) 유출된 물질의 제거 시 사용 가능한 흡수제 및 물일 이용한 가스 저감 방법 작성, 유출된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작성하고 관련 장비를 작성, 적절하지 않은 제거 방법도 고려하여 작성 - (예시) 누출물을 건토, 건사 또는 비가연성 물질로 덮어 흡수, 가스 및 증기를 저감하기 위해 물 스프레이 사용, 희석액을 가지고 유출지역을 제독, 분말상태의 유출물은 플라스틱 시트 또는 방수천으로 덮어 확산을 최소화, 유출된 물질은 젖은 타월이나 천 조각으로 덮고, 액체 표백제 또는 기타 살균제로 적셔두도록 조치, 물질을 다룰 때 스파크가 없는 장비를 사용,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반드시 접지 필요

○ 폐기방법 작성방법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서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중 “4. 폐기방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내용을 기초로 작성

〈표 19〉 화학물질안전정보(폐기방법)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폐기방법 ⁽⁴⁾	폐기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절한 폐기방법) 해당물질 및 오염된 포장재의 적절한 폐기방법을 작성, 폐기물 처리 시 주의사항을 작성 - (예시) 가연성이 좋은 물질에 녹이거나 혼합시킨 후 재연소 장치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소각로에서 태움, 연소 시 방출되는 연기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이나 아세톤으로 희석시켜 연소시킴, 적절한 장소에서 가연성 물질과 멀리 떨어져 소각시킴,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양도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2)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 관리대책)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 관리대책을 작성 - (예시) 국가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 공인된 폐기 규정에 따라 처리

(4) 폐기방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 4. 폐기방법 참고

○ 유해화학물질 등 정보 작성방법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서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중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내용을 기초로 작성

<표 20> 화학물질안전정보(유해화학물질 등 정보)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유해화학물질 등 정보	함유 여부 및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유여부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함유여부를 작성 • 규제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상 함량 정보를 작성 • (예시) 유독물질 혼합물 함량정보 : 폼알데하이드 및 폼알데하이드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위해성 정보 작성방법

-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화학물질 등록신청 서류 중 “2.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내용을 기초로 작성

<표 21>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 정보)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위해성 정보	용도기술 (공급망 내 확인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작성된 용도를 참고하여 작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제시된 55개의 용도분류를 확인하여 공급망 내 확인된 용도 작성 • 용도는 산업적/전문적 용도와 소비자 용도로 구분하여 작성 • (예시) 산업적/전문적 용도 : 세제 및 세척제(Cleaning and Washing agents)
	제조 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 소비자, 환경 노출과 관련된 기간, 사용 및 노출빈도 작성 • (작업자) 공정과 관련하여 작업자의 활동에 따라 물질에 노출되는 기간 및 빈도를 작성 • (소비자) 소비자의 활동 및 물질에 노출되는 기간 및 빈도를 작성, 최악의 경우로서 일일 24시간을 가정하거나, 노출이 발생하는 특정 활동 시간을 작성 • (환경) 다양한 환경영역 및 하수처리 시설로부터 물질 배출기간 및 빈도 등을 작성, 점오염원의 경우 배출이 연속적, 빈번한, 간헐적, 돌발적에 따라 배출기간을 산정하여 작성, 광범위한 분산형 사용은 연속형 배출에 해당되므로 연간 365일로 적용 • (예시) 작업자 : 반도체 제조공정- 세정작업 (8시간/일, 5회/시간), 소비자 : 바닥청소 (30분/일, 7회/주), 환경 : 연간 제조일수(360일), 하수 처리시설에서의 배출빈도(3회/일)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노출과 관련된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을 작성 • (작업자) 작업자가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량을 적용하여 작성 • (소비자)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제품의 취급량과 제품 내 물질의 함량을 고려하여 작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시간당 사용량/활동에 따른 사용량과 같이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작성 • (예시) 반도체 세정공정 : 200kg/일, 20kg/단위작업당(세척)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해 각각 작업조건을 작성 • (예시) 반도체 세정공정 작업조건 (온도 : 20℃, 공정의 밀폐여부 : 밀폐된 공정, 주변환경 : 실내사용)
	위해성 저감 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 조치 (노출경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작업자 및 소비자 포함)에서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도 관리조치 작성 • (예시) 작업자 (안전 장비나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하거나 공정을 변경, 밀폐공정에서 작업하거나, 효율적인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 일반적인 환기 또는 기타 작업장 관리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작업자 보호를 위한 위해성 저감조치를 적용,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소비자 (흡입, 피부접촉, 섭취 등을 예방/저감하기 위하여 제품의 물리적 상태를 변형, 유통 제품내 물질의 농도를 제한, 피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 형태를 변경)
	환경에 대한 저감 조치 (노출경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서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도 관리조치를 작성 • (예시) 국소 현장에서의 일일 사용량을 제한, 하수처리시설내 배출수를 적절히 관리, 적절한 공정 관리를 통한 대기/수계/폐기물로의 배출을 저감시킴, 폐기물 가스처리에 따른 대기 배출량을 저감시킴. 폐수 처리에 따른 물 배출량을 저감시킴. 잔류물질을 적절히 폐기시킴
	폐기물 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 시 화학물질의 직간접적인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p>노출을 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위해도 관리조치를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과의 접촉을 최소화, 효율적 회수 또는 최적의 폐기를 위하여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리, 다른 산업공정 내 동일한 위해도 관리조치를 적용하여 처리, 반드시 소각
	노출 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별 평가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자 노출평가지 산정된 경로별 노출량 기재

○ 관련 법령규제 정보 작성방법

- 등록 시 제출했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중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내용을 기초로 작성

<표 22> 화학물질안전정보(관련 법령규제 정보)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관련 법령규제 정보	관련 법령규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화학물질, 안전, 환경, 제품 관련 규제정보 및 국외 국제협약 관련 정보를 작성 국내 규제정보 : 화학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안전(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환경(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먹는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제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외 국제협약 : 로테르담협약물질, 스톡홀름협약 물질, 몬트리올의정서물질 (예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 : 사고대비 물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질,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 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독성가스

○ 참고자료 작성방법

<표 23> 화학물질안전정보(참고자료)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참고자료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에 활용된 참고자료를 작성 (예시)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 사례

-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등록된 용도는 9. 세정 및 세척제(반도체 세정용)와 33. 중간체(고무, 섬유, 수지 합성원료)이므로 11. 위해성 정보는 해당 용도별로 세정 및 세척제와 중간체로 각각 작업조건에 따라 제조공정기술, 위해도 저감기술 내용 기술

<표 24> 별지 제25호서식 작성 예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2. 20.>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제1쪽)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제 공 자	상호(명칭)	주식회사에이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에이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담당 (전자우편: 031-123-4567)
	소재지(사업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23번지 (전화번호: 031-123-4567)(팩스번호: 031-123-4568)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벤젠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71-43-2	상품명	ABC-D
	등록·신고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등록·신고번호 기재	용도	9. 세정 및 세척제(반도체 세정용) 33. 중간체(고무, 섬유, 수지 합성 원료)
	유해화학물질 등 여부	[0]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물리적 위험성, [] 건강 유해성, []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분 류 표 시	물리적위험성	인화성 액체(구분2)	
		건강유해성	급성독성-경구(구분4), 피부 부식성/자극성(구분2), 심한 눈 손상/자극성(구분2),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1), 발암성(구분1), 표적장기-반복노출(구분1), 흡인유해성(구분1)	
		환경유해성	수생환경유해성-만성(구분3)	
저장 보관 방법	온도, 습도, 등 저장·보관 조건, 정전기 방지 조치	· 서늘한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불과 떨어진 곳에 저장한다. · 저장 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식품, 사료, 의약품과 혼합저장 하지 않는다. · 흡연, 직사광선, 열 및 점화원을 피해서 저장한다. · 정전하(static charge)를 분산시키기 위해 액체 운반을 수반하는 장비는 땅에 접지시킨다.		
취급시 주의 사항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 빈 용기를 가압, 절단, 용접, 납땜, 연마, 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열, 스파크, 화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점화원과 가까이 두지 않는다.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 취급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

1. 물질 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벤젠				
	고유번호(CAS No. 등)	71-43-2	상품명	ABC-D		
	등록·신고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등록·신고번호 기재				
	용도(상세기술)	세정 및 세척제(반도체 세정용) 중간체(고무, 섬유, 수지 합성 원료)				
2. 물리적·화학적 특성	성상	맑은 무색 또는 담황색의 방향족 냄새가 나는 액체	녹는점	5.5℃		
	끓는점	80.1℃	증기압	94.8mmHg(25℃)		
	인화점	-11℃(closed cup)	물/ 옥탄올분배계수 (LogKow)	2.13		
	물용해도	1,790mg/L(25℃)	기타	· 밀도 : 자료없음 · 입도분석 : 자료없음 · 점도 : 0.60mPa.s · 해리상수 : 자료없음		
3. 분류 표시 정보	구분	유해성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인화성 액체	2		위험	H225
	건강 유해성	급성 독성-경구	4			H302
		피부 부식성/자극성	2			H315
		심한 눈 손상/자극성	2			H319
생식세포 변이원성		1	H340			
발암성		1	H350			
표적장기-반복노출	1	H372				
흡인유해성	1	H304				
환경 유해성	수생 환경유해성-만성	3			H412	
4. 유해성 정보	인체 유해성	항목	독성정보			
		급성독성	· 경구 : 930mg/kg(LD50, rat) · 경피 : 48mg/kg(LD50, mouse) · 흡입 : 44.5mg/L/4시간(LC50, rat)			
		자극성	· 피부 : 보통자극성 [Standard Draize test] · 눈 : 보통자극성 [Standard Draize test]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없음			
		유전독성	· 양성 : 시험관내(in vitro) 시험(Ames 시험) · 양성 : 생체내(in vivo) 시험(소핵시험, rat, 흡입)			
		반복투여독성	· 아만성독성(90일) : Rat을 대상으로 한 흡입시험에서 임상적 또는 체중 변화가 있음. 고농도에서는 백혈구가 감소함. 암컷에서는 갑상선 무게가 증가함			
		기타	· 발암성 : 발암성 있음 · 흡인유해성 : 직접적 흡인 시 폐부종과 출혈이 발생함.			

		항목	독성정보
4. 유해성 정보	환경유해성	수생생물독성	· 어류(LC50) : Oncorhynchus mykiss, 5.3mg/L/96시간 · 갑각류(EC50) : Daphnia magna, 20.6mg/L/48시간 · 조류(EC50) : Chlorella vulgaris, 312mg/L/72시간
		육상생물독성	· 식물(EC50) : Lactuca sativa, >1 mol/m ³ /3일 · 지렁이(LC50) : Eisenia foetida, 0.1-1 mg/cm ² /48시간
		분해성	· 이분해성 : 활성슬러지, 14일 후에 100% 분해됨 (호기성, OECD TG 301) · 본질적 분해성 : 활성슬러지, 14일 후에 80% 분해됨 (호기성, OECD TG 302) · 가수분해 : 가수분해 작용그룹의 부재로 인해 가수분해는 일어나지 않음
		기타	· 축적성 : BCF 24-30(어류나 수생생물에 생물농축성이 낮음) · 잔류성 : 반감기(대기 : 13일)
	물리적위험성		· 폭발성 : 화염이 있을 경우 폭발성 있음 · 인화성 : 인화성 있음(인화점 - 11℃, 끓는점 80.1℃) · 산화성 : 산화성 없음
5. 노출 기준	구분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국내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TWA : 1ppm(3mg/m ³), STEL : 5ppm(16mg/m ³). C : -	
	국외	1) [ACGIH] TLV : TWA : 0.5ppm, STEL : 2.5ppm, C : - 2) [NIOSH] REL : TWA : 0.1ppm(10시간), STEL : 1ppm, C : - 3) [OSHA] PEL : TWA : 1ppm, STEL : 5ppm, C : -	
6. 취급 방법	저장 및 보관방법	· 서늘한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불과 떨어진 곳에 저장한다. ·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식료품, 사료, 의약품과 혼합저장 하지 않는다. · 흡연, 직사광선, 열 및 점화원을 피해서 저장한다. · 정전하(static charge)를 분산시키기 위해 액체 운반을 수반하는 장비는 땅에 접지시킨다.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 빈 용기를 가압, 절단, 용접, 납땀, 연마, 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열, 스파크, 화염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점화원과 가까이 두지 않는다.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 취급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취급자에 대한 응급 조치방법	· 흡입했을 때는 즉시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고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mouth-to-mouth)을 사용하지 말고, 호흡용 기구(예, pocket mask)를 이용한다. 환자가 호흡이 곤란하면 습기가 가미된 100%의 산소를 공급한다. ·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긴다. 오염물이 피부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다량의 물과 비누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 (20분 이상)까지 씻어낸다.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씻는다.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작업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뺀다. · 삼켰을 때는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한다.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7. 화재시 대처 방법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OSH/MSHA에서 인증한 자급식 공기호흡기 및 전신 보호복을 착용한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적인 혼합물을 형성하거나 바닥을 따라 점화원에 도달하여 역화(flash back)될 수 있다.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가 발생하면 건조분말, 이산화탄소, 정규포말을 사용하여 진화한다. · 직접 물을 분사하지 않는다. · 탱크, 화차(rail car), 탱크트럭의 화재 시는 최대한 먼 거리에서 진화하고 무인호스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한다.
8. 누출시 방제 요령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진압용 보호의는 누출 시에는 비효율적이므로 화재발생 시에만 착용한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는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않는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한다. · 절대로 용기내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누출물과 가연성물질(나무, 종이, 기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누출지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낮은 곳(하수구, 지하 등)에 모이게 되므로 저지대를 피한다. · 바람과 반대방향(upwind)으로 위치한다. · 누출지역을 적어도 반경 50-100미터까지 차단시킨다. · 수로나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약품, 장비 및 방제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에 누출시는 HEPA(high-efficiency particulate arrestor)형 필터나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여과하고, 사용한 필터는 플라스틱 백에 넣어 밀봉 후 소각한다. · 누출물을 건토(乾土), 건사(乾砂) 또는 비가연성물질로 덮어 흡수시킨다. ·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하여 누출물의 확산방지 및 우천시 빗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 구덩이나 연못을 만들어 한곳에 모아 누출물의 확산을 방지한다. 또는 흙, 모래주머니, 콘크리트(foamed concrete) 등으로 제방을 쌓아 누출물의 지표상 확산을 방지한다.
9. 폐기 방법	폐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이 좋은 물질에 녹이거나 혼합시킨 후 재연소장치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소각로에서 태운다. · 연소 시 방출되는 연기를 줄이기 위해 알코올이나 아세톤으로 희석시켜 연소시킨다. · 혐기성세균에 의해 생분해시킨다. · 매립하지 않는다.

10. 유해 화학물질 등 정보		함유여부 및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유여부 : 유독물질 ·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물(제품)함량정보 :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금지 또는 제한내용 : 유기용제인 경우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 산업적/전문적 용도 : 9. 세정 및 세척제(반도체 세정용)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 작업자 : 반도체 제조공정-세정(8시간/일, 5회/시간)
			· 환경 : 연간 제조 일수(360일), 하수처리시설에서의 배출빈도(3회/일)
			· 반도체 세정공정 : 200kg/일, 20kg/단위작업당(세척)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 반도체 세정공정 작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도 : 20℃ - 공정의 밀폐여부 : 밀폐된 공정 - 주변환경 : 실내사용
11. 위해성 정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입 노출 차단 마스크 착용(효율 97% 이상) 6) 담그거나 들이부어 완제품 처리(도금)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시설 운영 · 피부 노출 차단 장갑 착용(화학물질용 안전 장갑 사용) · 흡입 노출 차단 마스크 착용(효율 99% 이상)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 현장에서의 일일 사용량을 제한한다. · 하수처리시설내 배출수를 적절히 관리한다. · 폐기물 가스처리에 따른 대기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 잔류물질을 적절히 폐기시킨다
	폐기물 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회수 또는 최적의 폐기를 위하여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리한다. · 반드시 소각한다.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p>1)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4.90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2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6.86E-03 mg/kg/day <p>2)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4.90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2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1.37E-01 mg/kg/day <p>3) 비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 용기로부터 이송 및 운반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4.90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2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6.86E-03 mg/kg/day <p>4) 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 용기로부터 이송 및 운반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6.13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5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6.86E-01 mg/kg/day <p>5) 저장된 주입 라인에서 소형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7.36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84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1.03E-02 mg/kg/day <p>6) 담그거나 들이부어 완제품 처리(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4.90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2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6.86E-03 mg/kg/day
11. 위해성 정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 산업적/전문적 용도 : 33. 중간체(고무, 섬유, 수지 합성 원료)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 작업자 : 원료 투입 및 합성(8시간/일, 5회/시간) · 환경 : 연간 제조 일수(360일), 하수처리시설에서의 배출빈도(3회/일)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 수지 합성공정 : 20톤/일, 200kg/단위작업당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 합성공정 작업조건 - 온도 : 20℃ - 공정의 밀폐여부 : 밀폐된 공정 - 주변환경 : 실내사용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p><작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간: 1일 기준 8시간 (표준교대 근무 및 정상 주간 근무 수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로 개인 보호 장구 사용, 방진·방독(1급 방진/유기화합물용 방독) 겸용 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 보호복 3 또는 4형식(부분) 이상,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사용 <p>1)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환기 · 피부 노출 차단 장갑 착용(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사용) · 흡입 노출 차단 마스크 착용(효율 90% 이상) <p>2)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시설 운영 · 피부 노출 차단 장갑 착용(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사용) · 흡입 노출 차단 마스크 착용(효율 90% 이상) <p>3) 비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 용기로부터 이송 및 운반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시설 운영 · 피부 노출 차단 장갑 착용(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사용) · 흡입 노출 차단 마스크 착용(효율 99% 이상) <p>4) 고정형 저장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 용기로부터 이송 및 운반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시설 운영 · 피부 노출 차단 장갑 착용(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사용) · 흡입 노출 차단 마스크 착용(효율 95% 이상) <p>5) 저장된 주입 라인에서 소형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시설 운영 · 피부 노출 차단 장갑 착용(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사용) · 흡입 노출 차단 마스크 착용(효율 97% 이상) <p>6) 담그거나 들이부어 완제품 처리(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시설 운영 · 피부 노출 차단 장갑 착용(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사용) · 흡입 노출 차단 마스크 착용(효율 99% 이상)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 현장에서의 일일 사용량을 제한한다. · 하수처리시설내 배출수를 적절히 관리한다. · 폐기물 가스처리에 따른 대기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 잔류물질을 적절히 폐기시킨다
		폐기물 관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회수 또는 최적의 폐기를 위하여 폐기물을 분리하여 처리한다. · 반드시 소각한다.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p>1) 노출 우려가 거의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4.90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2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6.86E-03 mg/kg/day 	

		<p>2)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4.90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2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1.37E-01 mg/kg/day <p>3) 비고정형 저장 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 용기로부터 이송 및 운반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4.90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2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6.86E-03 mg/kg/day <p>4) 고정형 저장 용기에 저장 또는 저장 용기로부터 이송 및 운반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6.13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5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6.86E-01 mg/kg/day <p>5) 저장된 주입 라인에서 소형 용기에 주입하는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7.36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84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1.03E-02 mg/kg/day <p>6) 담그거나 들이부어 완제품 처리(도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 흡입 노출: 4.90E-02 mg/m³ · 만성 흡입 노출: 1.23E-02 mg/m³ · 만성 경피 노출: 6.86E-03 mg/kg/day
<p>※ 위 "위해성 정보"는 용도별 위해성 정보를 별도로 적습니다.</p>		
<p>12. 관련 법령 규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4류 제1류 석유류(비수용성)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기준설정물질, 하천, 호소환경기준설정물질, 해역환경기준설정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특정수질유해물질 - 먹는물관리법 : 건강상 유해영향유기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우려기준설정물질, 토양오염대책기준설정물질 -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해당 없음 · 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p>13. 참고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DB(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함께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위해성 정보)의 항목은 별지 제25호서식 항목의 일부이기 때문에 작성방법은 항목별 작성방법은 동일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산안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 등록정보 반영 예시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정보	함유량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록·신고번호	기타 분류 및 표시 관련 정보(M계수 등)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위해성에 관한 자료에서 평가된 PNEC, DNEL 값 추가 기재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위해성에 관한 자료에서 기술된 위해도관리대책 관련 내용 기재
다. 개인보호구 → 위해성에 관한 자료에서 기술된 위해도관리대책 관련 내용 기재

○ 기타 등록 사례에 따른 작성방법

- 1) 자료보호 신청 수리 및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일부 제외 승인받은 물질의 경우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받은 정보에 대해 대체정보(총칭명) 또는 영업비밀로 작성 가능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5조에 따른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아래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료일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해야 함

※ 참고(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료 보호 신청 관련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제30조(자료의 보호)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자료보호 신청 수리된 물질이어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 양도 시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참고(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제공대상)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1.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 이외 안전정보 작성항목 중 영업비밀로서 자료보호되는 정보 중 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 받은 정보(화학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함유량 등)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음

<예시 1> 자료보호 신청 및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일부 제외 승인받은 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별지 제25호서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12. 20.>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제1쪽)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i>(총칭명 기재)</i>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영업비밀	상품명	ABC-D
	등록·신고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00-0000-00000	용도	9. 세정 및 세척제(반도체 세정용) 33. 중간체(고무, 섬유, 수지 합성 원료)
	유해화학물질 등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 <input type="checkbox"/>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위험성, <input type="checkbox"/> 건강 유해성, <input type="checkbox"/>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2쪽)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				
1.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i>(총칭명 기재)</i>		
	고유번호(CAS No. 등)	영업비밀	상품명	ABC-D
	화학물질 등록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00-0000-00000		
	용도(상세기술)	9. 세정 및 세척제(반도체 세정용) 33. 중간체(고무, 섬유, 수지 합성 원료)		

- 함유량 정보에 대하여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받았을 경우,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는 기재항목이 아니나, 별지 제26호서식과 전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란에 함유량 부분을 영업비밀로 작성하고 제외대상 승인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예시 2> 별지 제26호서식과 함께 전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자료보호 신청 또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일부 제외 승인받은 물질의 경우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 작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총칭명 기재)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
스타이렌	비닐 벤젠	100-42-5	1~3
스테아르산 칼슘	칼슘 스테아레이트	1592-23-0	1~3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추가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봄)			

2) 정보제공 대상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 양도의 경우

-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함께 별지 제26호서식 자료를 제공
-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에는 정보제공대상 화학물질 기준 위해성정보가 기재되나,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혼합물 기준 정보가 기재됨
- 그러나 구성성분별 정보가 기재되는 일부 항목에 아래와 같이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된 자료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함

<예시 3> 정보제공 대상성분이 포함된 혼합물 제품 양도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과 함께 전달하는 혼합물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등록·신고된 자료 내용 반영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정보제공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자료 반영 예시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번호, 기타 분류 및 표시 관련 정보(M계수 등) 추가 기재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정보제공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자료 반영 예시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눈 보호: ○ 손 보호: ○ 신체 보호:	관한 자료에서 평가된 PNEC, DNEL 값, 위해도관리대책 추가 기재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또는 신고 시 제출된 인체 유해성 자료 정보 추가 기재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다. 생물 농축성: 라. 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또는 신고 시 제출된 환경 유해성 자료 정보 추가 기재

2.5. 벌칙

벌칙 및 과태료 (법 제52조, 제54조)

- 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화학물질 정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등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표 25> 화학물질 양도자의 정보제공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벌칙/과태료	법 조항	벌칙/과태료 해당 내용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2조제2호	• 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4조제4호	• 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화학물질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화학물질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화학물질 정보의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제3장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
 -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
 -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의 정보

- 해당 장에서는 공급망 내에서 상호 요청 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상 및 주체, 정보제공 내용,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설명



〈그림 14〉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3.1. 정보제공 대상 및 주체

정보제공 대상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해당

정보제공 주체

- 1)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
 -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
 -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림 15> 화학물질 정보제공 주체

3.2. 정보제공 범위 및 내용

정보제공 범위

1) 하위사용자·판매자 정보제공 내용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표 26> 화학물질 하위사용자·판매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번호	화학물질안전정보
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명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화학물질 사용량·판매량
4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2) 제조·수입자 정보제공 내용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표 27>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번호	화학물질안전정보
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그림 16〉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자·수입자 상호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영업비밀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미포함 가능

-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받은 경우*

-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또는 20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 제외(화학물질안전정보 포함)

정보제공 내용

- 화학물질안전정보는 제공자, 물질정보, 안전정보 3개 항목으로 구성

〈표 28〉 화학물질안전정보 구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1. 제공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2. 물질정보	함유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함량 및 함량 범위(%), 상품 취급수량(톤) : 사용량/판매량/제조량/수입량, 화학물질 사용(가능) 용도, 화학물질 사용제한 용도, 화학물질 노출정보
3. 안전정보	저장·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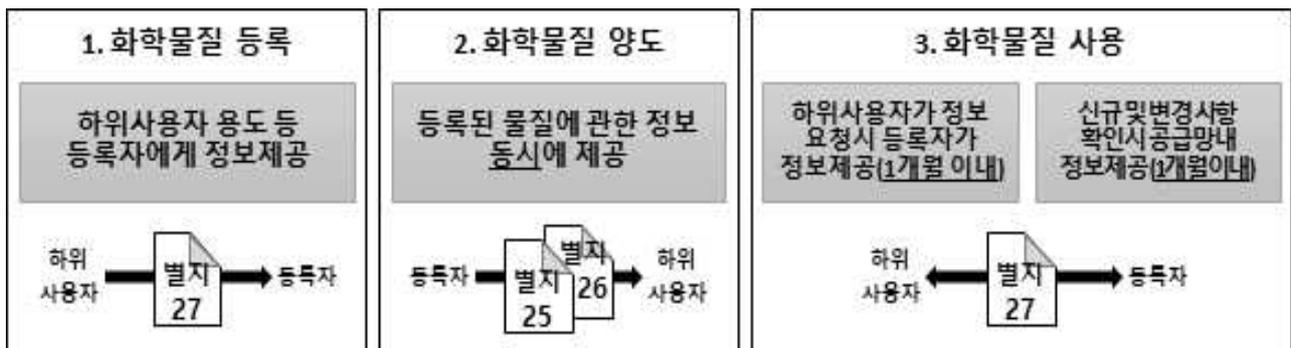
3.3.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시기 및 절차

정보제공 시기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의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
- 화학물질(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양도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해당 화학물질 양수자에게 양도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정보제공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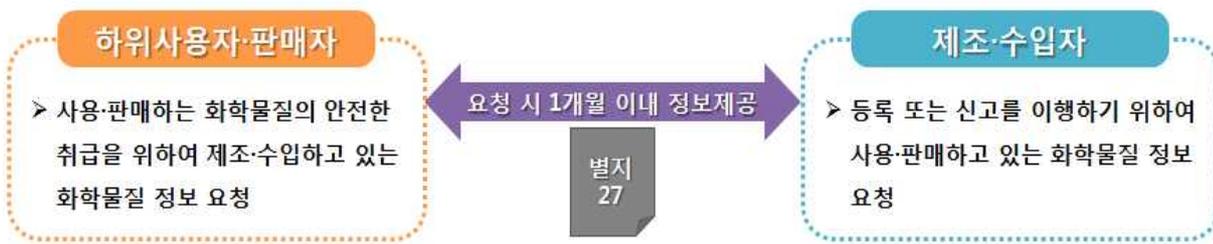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그림 17>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절차

정보제공 방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를 제공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자·수입자 상호 간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그림 18>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자·수입자 상호 간 화학물질 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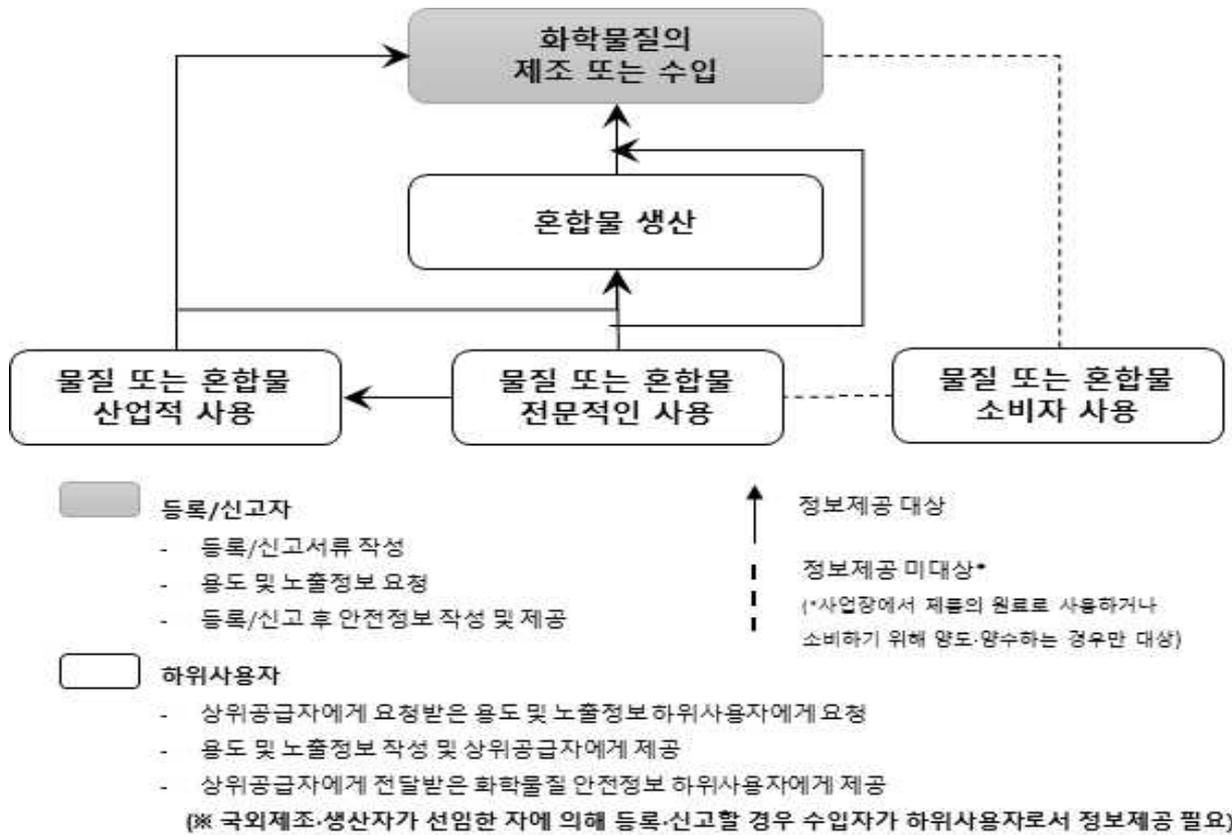
- 등록 또는 신고를 위해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용도 및 그 노출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위해성자료 제출 대상(연간 제조·수입량 10톤 이상)일 경우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용도와 관련한 노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등록 또는 신고대상에 따라 제조·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는 아래와 같음

<표 29> 등록 또는 신고대상 화학물질에 따른 하위사용자 제공 정보

이행대상		하위사용자 제공 정보
등록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물질에 대한 용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분류체계 - 용도범주(산업적/전문적 용도 또는 소비자 용도)에 따른 구체적 용도
	위해성자료 제출 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물질에 대한 용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분류체계 - 용도범주(산업적/전문적 용도 또는 소비자 용도)에 따른 구체적 용도 해당 물질에 대한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시행규칙 [별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용범주(밀폐된 시스템,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 비분산적 사용,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 시설의 형태(제조시설, 저장보관시설, 이송운반시설, 사용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 주요 노출경로(인체 노출 및 환경 노출) - 노출 형태(돌발적·간헐적, 가끔씩, 지속적·빈번한, 기타) - 일일 평균 제조·사용량 및 연간 제조·사용일수에 관한 기술 - 기타 사업장 내 물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및 공정도 붙임 필요
	위해성자료 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물질에 대한 용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분류체계 - 용도범주(산업적/전문적 용도)에 따른 구체적 용도

이행대상	하위사용자 제공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환경 노출평가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취급수량(사용량, 판매량, 제조량, 수입량) - 사업장 정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배출정보(매체별 배출량, 1년 중 배출일수 또는 조업일수, 환경오염방지시설 적용여부, 환경배출범주) - 사용정보(주요사용범주, 산업분류체계, 사용시설 관련 구체적 기술) •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작업자 노출평가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정보(공정범주, 물리적상태, 분진발생 정도, 공정온도, 작업시간, 작업빈도) - 위해성관리 정보(환기시설 또는 국소배기장치 사용유무, 보호구 종류 및 효율, 기타 위해성관리 조치) •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소비자 노출평가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사용정보(제품범주, 제품 사용방법, 회당 제품 사용량) - 기타 소비자 노출 관련 정보(용출속도, 휘발속도, 증발속도 등)

- 하위사용자는 제조·수입자에게 요청받은 정보를 직접 사용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양도 시 그 다음 단계의 하위사용자의 사용 정보 또한 상위공급자로서 요청하여 전달하여야 함(〈그림 19〉 참고)
- 해당 물질이 전량 소비되거나, 완제품 내 유출·누출 우려가 없는 단계까지 하위사용자의 정보가 수집되어야 함



<그림 19> 화학물질 유통 공급망 내 등록·신고를 위한 하위사용자 정보제공 개요

- 이에 따라 용도에 따른 노출정보 및 위해성에 관한 자료가 등록·신고되고, 하위사용자는 양도자에게 제공받은 화학물질안전정보내 등록·신고된 용도로 사용·판매하여야 함
- 양도자(제조·수입자)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하위사용자의 용도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용도가 등록·신고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함

3.4. 하위사용자 등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및 사례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 제공자 작성방법

〈표 30〉 화학물질안전정보(제공자)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1. 제공자	상호(명칭)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기업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상호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 제공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성명(대표자)	• 제공기업의 대표자 성명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작성
	소재지(사업장)	• 제공기업의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물질정보 작성방법

〈표 31〉 화학물질안전정보(물질정보)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2. 물질정보	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명 작성
	고유번호(CAS No 등)	•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 작성
	상품명	• 해당 화학물질의 함유된 상품명 작성
	함량 및 함량범위(%)	•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 및 함량범위를 %로 작성
	상품 취급수량(톤) : 사용량/판매량/제조량/수입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량, 판매량, 제조량, 수입량을 톤단위로 작성 • (사용량, 판매량)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 • (제조량, 수입량)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는 정보
화학물질 사용(가능) 용도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2]에 제시되어 있는 55개의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를 확인하여 모든 용도 작성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사용자·판매자)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하는 모든 용도 작성 • (제조·수입자)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모든 용도 작성
	화학물질 사용제한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수입자) 해당 화학물질의 법적인 사용제한 용도 작성 및 등록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체·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용제한 용도 작성 • (예시) 5세 이하 유아용 제품에는 사용 금지, 가정용 세척제·잉크·페인트로 사용금지 등
	화학물질 노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사용자·판매자)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시 노출될 수 있는 노출정보 작성 • (예시) 인체 및 환경노출 : 자동화된 밀폐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나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거의 없음

○ 안전정보 작성방법

<표 32> 화학물질안전정보(안전정보) 작성방법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3. 안전정보*	저장·보관방법	1) (저장공간 및 저장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저장공간, 적절한 재질·모양(형태)의 저장용기, 환기시설 등을 작성 - (예시) : 서늘한 장소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며,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야 함
		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혼재 저장·보관 금지물질 작성,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으로 저장·보관 유의사항 작성, 해당 물질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분해 생성물을 작성 - (예시) : 산화제 및 가연성물질과 혼재 저장·보관 하지 않으며, 알칼리 금속류 및 수소화물류와 함께 인화성 수소를 발생시킴
		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보관 조건) 온도, 습도, 직사

항목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방법
		<p>광선, 점화원, 흡연 등 저장·보관 시 주의해야 할 조건 등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35℃ 이하의 조건에 저장·보관하며, 직사광선, 열, 점화원을 피하여 저장·보관 <hr/> <p>4) (정전기 방지 조치) 저장·보관 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를 접지시키고 땅에 밀착시켜 보관
	<p>취급시 주의사항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p>	<p>1) (사고예방 정보) 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분진발생과 분진축적을 최소화하며, 강환원제와 산과의 접촉을 금지 <hr/> <p>2)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취급자를 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 및 작업복을 착용 <hr/> <p>3)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작업장 내 음식섭취 금지, 금연, 작업 후 손 깨끗하게 씻기, 오염된 옷 및 보호구 탈의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수입자)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정보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작성 • (예시) 유독물질에 해당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 3. 안전정보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 참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 사례

- 1) 정보제공자 : 하위사용자(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수입자 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요청한 경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12. 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위사용자·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제조자·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제 공 자	상호(명칭)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하대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김담당 (이메일주소: abc@chemical.com)
	소재지(사업장)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전화번호: 031-123-4567) (팩스번호: 031-123-4568)		
물 질 정 보	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폼 할데 하이드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50-00-0		
	상품명	ABC-P		
	함량 및 함량범위(%)	5~10%		
	상품 취급수량(톤)	사용량	1톤	
		판매량	0톤	
		제조량	0톤	
		수입량	0톤	
화학물질 사용(가능)용도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에 사용			
화학물질 사용제한용도	-			
화학물질 노출정보	국소배기장치가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므로 노출 가능성 적음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저장 보관 방법	저장공간 및 저장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	-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밀폐보관 - 서늘한 장소에서 밀폐된 용기에 보관 -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 식료품, 사료, 의약품과 혼합저장 하지 않음	
		온도, 습도 등 저장·보관 조건	- 서늘한 온도에서 저장	
		정전기 방지 조치	- 정전기 방지를 위해, 용기를 접지시키고 땅에 밀착시켜 보관	
취급시 주의 사항	사고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 빈 용기를 가압, 절단, 용접, 납땜, 연마, 천공하지 않음 -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 점화원과 가까이 두지 않음 - 분진 발생과 분진축적을 최소화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 - 취급 후, 손을 깨끗하게 씻음		
	기타	-		

2) 정보제공자 : 제조·수입자 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12. 20.>					
[] 하위사용자·판매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 제조자·수입자					
제 공 자	상호(명칭)	(주)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135-79-12345	
	성명(대표자)	주대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박담담 (이메일주소: ganada@make.com)	
	소재지(사업장)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7 (전화번호: 02-135-7890) (팩스번호: 02-135-7891)			
물 질 정 보	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톨루엔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108-88-3			
	상품명	GANADA-P			
	함량 및 함량범위(%)	85%			
	상품 취급수량(톤)	사용량	0톤		
		판매량	0톤		
		제조량	3톤		
		수입량	0톤		
화학물질 사용(가능)용도	냉매 합성 중간체, 세정 및 세척제				
화학물질 사용제한용도	호흡기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소독, 살균제로는 사용을 제한				
화학물질 노출정보	50 ppm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저장 보관 방법	저장공간 및 저장용 기에 대한 재질, 특 정한 모양·형태, 환 기시설 등	- 열,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 격리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생성물 등	- 식료품, 사료, 의약품과 혼합저장 하지 않음		
		온도, 습도 등 저장· 보관 조건	- 저온 온도에 보관		
		정전기 방지 조치	- 정전기 방지를 위해, 용기를 접지시키고 땅에 밀착시켜 보관		
	취급시 주의 사항	사고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 - 취급 후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기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 금지 -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 공기 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기타		타 법령과의 규제 - 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대상			

3.5. 벌칙

벌칙 (법 제52조)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 제조자 및 수입자가 상호 정보요청 시, 정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등 벌칙 부과

<표 33>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관련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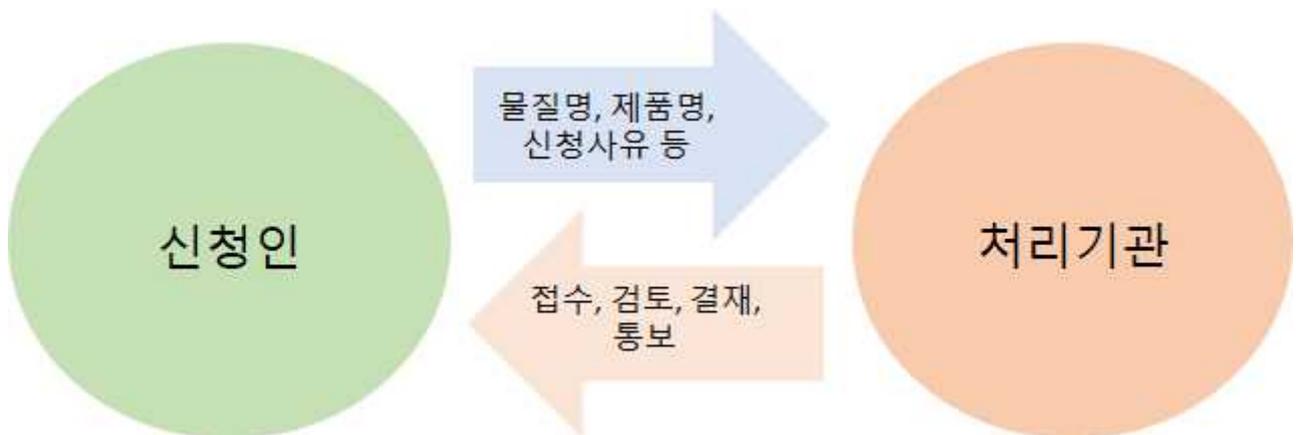
벌칙	법 조항	벌칙 해당 내용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2조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화학물질 정보 요청 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화학물질 정보 요청 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수입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하위사용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화학물질 정보요청 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수입자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하위사용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화학물질 정보요청 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4장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신청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 해당 장에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대상 및 주체, 정보 제공 내용, 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안내함



<그림 20>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 승인신청

4.1. 승인신청 대상 및 주체

승인신청 대상

- 정보제공 대상(제2장 “정보제공 대상” 참고)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다만, ① 유해화학물질 또는 ② 20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는 승인신청 불가

※ 참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표 34> 영업비밀 요건의 세부 내용

영업비밀 요건	정의
비공지성	정보가 출판물,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 - 정보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비공지성 상실 -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음
경제성	신청인이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영업비밀 그 자체가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 가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정보 그 자체가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영업비밀 요건	정의
비밀관리성	<p>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정보가 해당 신청인의 종업원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것</p> <p>- 영업비밀을 소유한 해당업체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야 함</p>
유용성	<p>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객관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의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 의미</p> <p>- 유용성이 있는 영업비밀은 이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 정보뿐만 아니라 경비의 절감 또는 손실발생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극적 정보도 포함됨(상품의 노하우, 실험자료, 연구보고서, 고객명부 등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p>

승인신청 주체

- 정보제공 주체(제2장 “정보제공 주체” 참조) 중, 정보제공 대상이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므로써 제공하지 않으려는 자

<표 35>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2021.1.16. 시행)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정보에서 제외 가능	영업비밀이라고 판단되는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제외를 원하는 정보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외승인을 신청해야 함

4.2. 승인신청 절차

승인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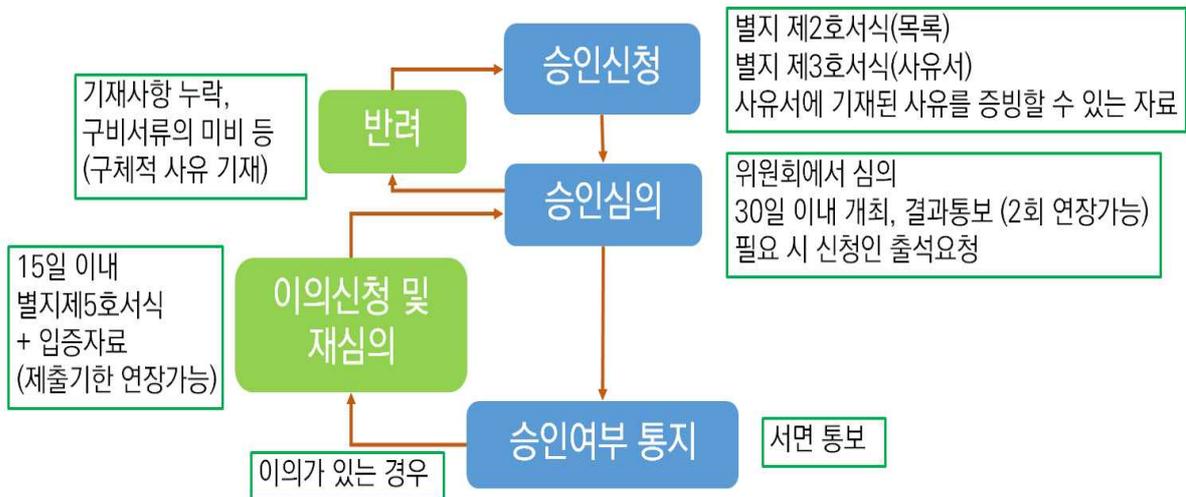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고시 제2020-230호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21.1.16시행)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엔 승인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로 제외대상 승인이 신청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엔 불승인하는 것이 원칙(신청인 입증책임)
- 승인신청 후 승인 필요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승인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회 가능

승인심의 및 결과통지

-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외대상 승인신청이 접수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심의기한은 30일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심의과정에서 필요 시 출석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승인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
-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승인여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15일 이내에 입증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엔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면서 추후 언제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적시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입증자료를 제출
 -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단순 이의신청의 경우엔 반려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승인심의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이의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



<그림 2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절차

4.3. 승인의 특례

승인신청 생략 대상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30호)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봄
- 산안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영업비밀로 표시(또는 대체정보 기재)하여 정보제공 가능

(예시) 산안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제품 “가”의 구성성분 “A”, “B”, “C” 중, 물질 A에 대해서만 비공개 승인받은 경우

- 물질 A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생략 (승인된 것으로 봄)
- 물질 B, C는 산안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지 못했으므로,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할 수 없음.
 - 단, 해당 물질에 대해서도 영업비밀로서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또는 산안법 제112조에 따른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신청 시 심의생략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의절차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승인 여부 결과확인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된 경우
- 제외대상 승인신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규칙 제37조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참고(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변경된 정보제공 대상 관련)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 제외대상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정보가 위의 심의생략 대상인 경우에는 승인신청 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
- 승인신청 생략 및 심의 생략 대상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대체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여 정보제공

4.4. 승인신청서류 작성방법 및 사례

승인신청서류 작성방법

○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표 36〉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상호(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기업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상호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성명(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업의 대표자 성명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작성
소재지(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업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작성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팩스, 기타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선택 및 작성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회사명을 기재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신청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
대표자 이름을 기재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및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합니다.

희망하는 심의결과를 받고 싶은 방법에 표기 후, 팩스번호 또는 정보통신망(이메일 등)을 기재

신청날짜와 신청인을 기재하고 서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의 증명서류(영업비밀 입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정함)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

<그림 2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 승인신청 목록 작성방법

- 승인신청 목록은 화학물질의 명칭에 따라 이를 함유한 제품명과 신청정보 및 대체정보를 작성
- 승인신청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여러 개인 경우 제품명 항목에 대상 제품 목록을 모두 기재
- 구성성분별 함유량의 대체정보 작성시 범위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체자료 중 대체 함유량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

<표 37> 화학물질안전정보(승인신청 목록)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하는 대상물질에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기재 • 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인 경우에는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재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하는 대상물질(혼합물, 단일물)의 제품명 기재 •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별 함유된 제품명을 모두 기재
신청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예: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중 ○○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별 함유량 등)를 기재
대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재 • 대체 함유량 작성시 원래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pm 10\%P$, 25% 이상인 경우 $\pm 20\%P$로 작성
신청요지 사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정보에 대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①번 항목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번호를 기재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재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

(예시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 ① 화학물질의 명칭을 작성하고, ② 제품명에 해당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모두를 기재(5개의 제품에 해당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5개의 행을 작성)

(예시2) 하나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하여 여러 개의 정보를 제외대상 신청하려는 경우

- ① 화학물질의 명칭과 ② 제품명을 작성하고, 제외대상 신청하려는 각각의 정보에 대해(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등) ③~⑥의 정보를 모두 기재

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기재

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①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② 제품명	③ 신청 정보	④ 대체 정보	⑤ 신청요지·사유서	⑥ 증빙서류			
					비공개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명을 기재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기재 (예 : 등록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기재)

대체 명칭 또는 대체 함유량을 기재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에 쓴 번호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①번)

각각의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재

작성방법

- ① 양도하는 물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양도하는 물질(혼합물, 단일물질)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예: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중 ○○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별 함유량 등)를 기재합니다.
- ④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6~30%)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⑤ 신청정보에 대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①번 항목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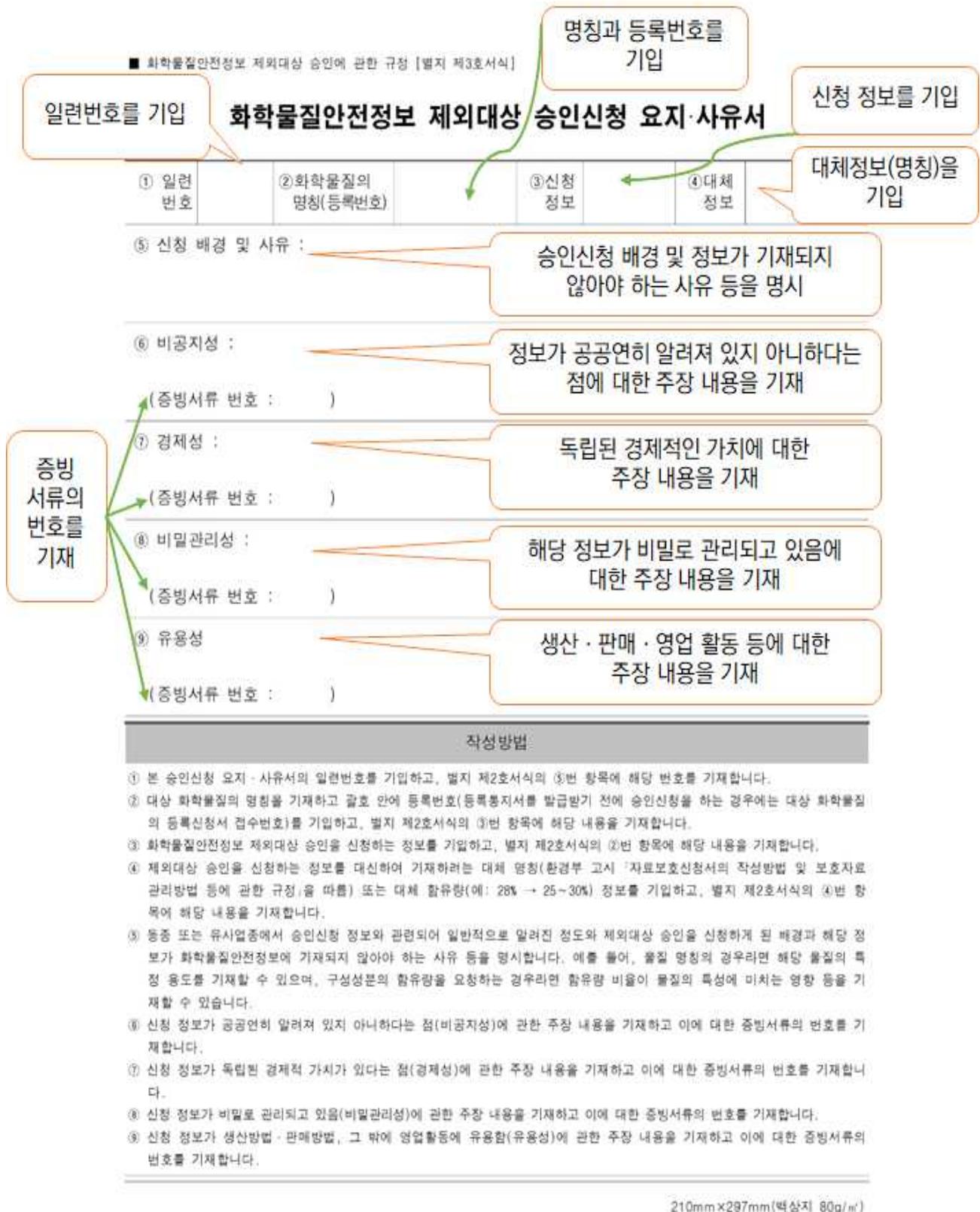
<그림 2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기재사항

○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작성방법

<표 38>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일련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지·사유서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승인신청 목록(별지 제2호서식)의 ⑤번 항목에 해당 번호를 기재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입하고, 승인신청 목록 서식의 화학물질의 명칭(별지 제2호서식의 ①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
신청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기입하고, 승인신청 목록의 제품명(별지 제2호서식의 ②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
대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입하고, 승인신청 목록의 신청 정보(별지 제2호서식의 ③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
신청배경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승인신청 정보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와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해당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기재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 <p>예) 물질 명칭의 경우라면 해당 물질의 특정 용도를 기재할 수 있으며,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함유량 비율이 물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할 수 있음</p>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공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점(비공지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 * 예) MSDS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에 대해 비공개 승인을 받은 내용,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신청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 내역, 신청정보가 공지되지 않은 홍보자료(카다로그 등), 비밀유지를 위한 거래약정 내용 등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경제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 * 예) 연구개발비용, 신청정보의 공개 시 신청인의 시장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유 등
비밀관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비밀관리성)에 관한 주장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 * 예) 비밀유지각서, 전산 보안시스템, 비밀보호를 위한 사내 규정, 접근 권한 제한, 비밀관리교육 내역 등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정보가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함(유용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 * 예) 신청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신청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내용 등(경제성으로 설명 가능할 시 경제성 설명으로 대체 가능)



〈그림 24〉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기재사항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시범사례 예시 1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 칭) 한국00(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대표자) 000 (000)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000 (00-0000-0000)	
	주소(사업장) 서울 00구 00로 00 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망(00000@0000.com)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한국00 (주)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의 증빙서류(영업비밀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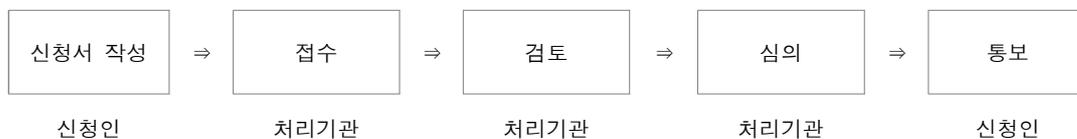
작성방법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입하여 첨부합니다.
2. 승인신청 항목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때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에 번호를 기입하고 해당 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에 기입합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에 작성한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제7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정보제공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목록: 별지 제2호서식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① 화학물질 의 명칭 (등록번호)	② 제품명	③ 신청 정보	④ 대체 정보	⑤ 신청요지 · 사유서	⑥ 증빙서류			
					비공지 성	경제성	비밀 관리성	유용성
○○○○○ (△△-2020-#####)	△△△△B	화학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	⊗⊗⊗⊗	1	MSDS		비밀 관 리성 입 증자료	
()								
()								
()								
()								
()								
()								
()								
()								
()								

작성방법

- ① 양도하는 물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양도하는 물질(혼합물, 단일물질)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예: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중 ○○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별 함유량 등)를 기재합니다.
- ④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⑤ 신청정보에 대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①번 항목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① 일련번호	1	②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 (△△-2020-#####)	③ 신청 정보	화학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	④ 대체 정보	○○○○○
-----------	---	----------------------------	--------------------------	---------------	-------------------------	---------------	-------

⑤ 신청 배경 및 사유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물질은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 영업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MSDS 등 정보전달 서류에도 “영업비밀” 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은 당사가 개발한 물질로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유사 성능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갖고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심의신청 대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타사에서 어렵지 않게 이를 모방할 수 있게 되어 당사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니다.

이에 위 심의신청 대상정보에 대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조,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합니다.

⑥ 비공지성 :

해당 성분에 대한 정보는 오직 회사내부에서만 관리되고, 사내에서도 연구개발팀과 법무팀(법적 규제사항 확인 목적)에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외 관련 정부기관의 특별한 요청 혹은 등록을 위한 자료제출 등을 제외하고는 결코 외부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타국가의 MSDS에도 ○○○○이라는 대체물질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3자는 당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관련 시장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로부터 위 정보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번호 : MSDS)

⑦ 경제성 :

해당 물질은 제품이 고유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사의 연구인력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사항으로, 0000년부터 0000년까지 00억원의 개발비용을 들여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와 비슷한 성능의 제품은 한두 업체에서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러나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서는 별도의 연구개발 노력 및 비용 지출 없이 당사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손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당사의 제품에 대한 시장경쟁 상황이 격화되고 오히려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된 당사의 경쟁적인 위치가 불리해짐으로써 당사의 영업이익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국외에 공개되는 경우 당사의 한국의 영업만이 아닌 해당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당사의 유관사의 영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어,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영업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경제성·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증빙서류 번호 :)

⑧ 비밀관리성 :

해당 성분에 관한 정보는 당사에서 제품안전, 연구개발 등 특정 부서의 권한이 있는 인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의 운영관리시스템인 000(ERP 시스템)에서 위 특정 부서의 인원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000의 승인요청은 회사 INTR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승인절차가 이루어집니다(증빙서류 PAGE 1).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다음에도 개별적인 정보접근 권한 신청은 별도로 해당 인원의 부서장의 승인과 본사의 검토 승인 절차를 통하도록 엄격하게 정보접근 권한을 제한하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을 받고 있습니다(증빙서류 PAGE 2-3).

그 밖에 전 임직원에게 정보보안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전 임직원 의무사항으로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을 통해 만점을 받지 못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게 교육관리를 하고 있으며, 교육기록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습니다(증빙서류 PAGE 4).

(증빙서류 번호 : 비밀관리성입증자료)

⑨ 유용성

경제성과 상동

(증빙서류 번호 :)

작성방법

- ① 본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⑤번 항목에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③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②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④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④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⑤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승인신청 정보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와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해당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기재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명칭의 경우라면 해당 물질의 특정 용도를 기재할 수 있으며,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함유량 비율이 물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청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점(비공지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신청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경제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⑧ 신청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비밀관리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신청 정보가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함(유용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증빙자료

- 비공지성 입증자료

- MSDS 자료로 대체

- 비밀관리성 입증자료*

* 예시된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로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ystem Access 권한 요청 Web Page(PAGE 1)

Assignment	System	Type	Valid From	Valid To	Assignment Appro.	Description	Comments
EC_1057401	FR1910	Single Role	08/09/2018	12/31/9999		FundCenter Restri...	Add Comments
MC_1057401	FR1910	Single Role	08/09/2018	12/31/9999		MaxCostCenter R...	Add Comments
RC00L1057401	FR1910	Derived Role	08/09/2018	12/31/9999		TA: 0574 - 05740...	Add Comments
RC009	RFC_PORTAL	Derived Role	08/09/2018	12/31/9999		Time Approver	Add Comments

- 특정 사업부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검토 승인(PAGE 2)

Action Required: Secure your devices with conditional access

MC110418
Plan For Change
Published On : July 25, 20

⚠ Action required by September 1, 20

Conditional access is expanding the coverage of platforms that can be secured by adding support for . Public preview of Conditional Access support will be introduced by the end of August. Conditional access policies that are defined for "All platforms" will now also support platform.

How does this affect me?

To secure access of devices with conditional access, you are required to create a compliance policy for devices in your tenant. In the absence of a compliance policy, users who enroll the devices with Intune will be considered compliant and get access to the resources protected by conditional access.

What do I need to do to prepare for this change?

Please follow the steps included in Additional Information to create a compliance policy.

• 0000 Access 권한 요청시 검토 승인 절차(PAGE 3)

Reviewing System Access

Each year, System access is reviewed for all users with elevated system access as a larger University effort to ensure data security. Managers are asked to review current security roles to either approve or remove system access for employees.

<p>Log in to the audit system at https://www.</p> <p>Click on Sign in with SSO and sign in with your NetID and password.</p>	
1.	To review and approve the access on the users first read the attestation statement, check the box confirming you agree, and then click continue.
2.	The system will navigate to the list of Employees that report to your role. Click "View" next to the name of the Employee to review
3.	A list of roles the Employee has access to will appear. If more information is needed, click "View" to review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age access per employee on an external page.
4.	If the role is Approved , click Keep access; the Audit Status will change to Keep .
5.	If the Employee's need for access has changed, click Remove access; the Audit Status will change to Remove . <i>Note: An email will be sent to myHR Security to remove the access.</i>
6.	If the Employee's department responsibilities have changed, roles can be changed with Modify access. Click "Modify" and enter departments that should be removed from the Employee's access in the new window. <i>Note: Access can only be removed by the modify function. To add access a security form will need to be submitted.</i>
7.	If the employee's job functions have not changed, or the employee has left the University, there is an option to Approval All or Remove All . After reviewing each role, scroll to the bottom of the page and click the appropriate Approve All or Remove All option. The screen will spin for a minute while the system completes the approval process and will the return you to the My Reviews screen.
8.	Click My Reviews to return to the list of direct reports. Repeat this process for the remaining Employees within the department access until all appear as Completed .

Changing Approver(s)

The approver has been selected system access review based on the individual designated as the employee's *Performance Reports* To approver in myHR. If this is not correct, follow the below instructions to change the myHR System Access Approver.

1.	Find the Employee in the list and click "Change Approver" . A new window will appear.
2.	Type the name of the new approver and select the name. Click "Submit" to save changes. If the approver is not on the list or you do not know who the approver is please click the box under Check This Box If You Cannot Find An Approver . <i>Note: An automated email from myHR Security will be sent to notify the new approver once activated.</i>

Additional Assistance

Questions or concerns regarding the Annual System Access Audit can be emailed to:

• 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교육(PAGE 4)

SANS Sally Security ▾
History + Certificates | Messages | Administrator Dashboard English (United States)

Cybersecurity Awareness Training
Welcome, Sally Security!

MESSAGES
1 unread messages

REQUIRED TRAINING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training activities.

OTHER (1)		
Title	Due	
SANS CYBER CULTURE SURVEY 4.0 Curriculum	-	✓
SANS Cyber Culture Survey 4.0	-	✓

RECOMMENDED TRAINING
The following training activities are optional.

DEVELOPER SECURITY AWARENESS (3)		
Title	Due	
Developer OWASP	-	
Injection Flaws	-	▶
Authentication	-	▶

SANS | ACLP © SANS Institute - The most trusted source for information security training, certification, and research.

○ 승인결정 통지 예시

■ [별지 제4호서식]

통지번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일부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제0000-000호				
신청인	상호(명칭)	한국00(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명(대표자)	000 (000)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000 (00-0000-0000)
	주소(사업장)	서울 00구 00로 00 0000 (전화번호: 00-0000-0000)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2020-#####)		
신청 정보		“화학물질의 명칭 및 CAS번호”		
결과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일부승인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이유	제외대상 승인신청 정보는 비공지성의 측면에서 객관적 공지의 정도, 정보획득의 난이도 등에 대한 소명이 되며, 엄격히 비밀로 관리되어 있음에 대한 소명도 됩니다. 경제성과 유용성은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등의 주장이 있을 뿐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회사홍보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물질이 관련 제품군의 성능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제성의 유추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합니다.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의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0000 년 00 월 00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환경부장관 직인 </p>				

210mm×297mm[백상지 80g/㎡]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시범사례 예시 2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 칭) ##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 ## ## ## ## (전화번호: ##-####-####)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 월 ##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환경부장관 귀하</p>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3.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의 증빙서류(영업비밀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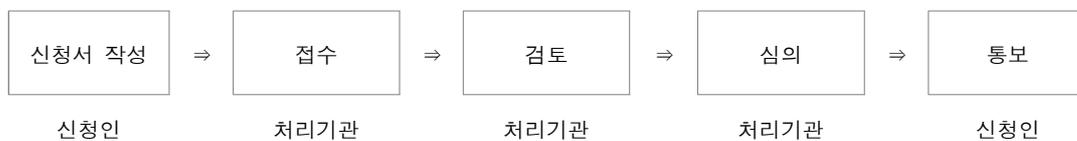
작성방법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입하여 첨부합니다.
2. 승인신청 항목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때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에 번호를 기입하고 해당 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에 기입합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에 작성한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제7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정보제공심의위원회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목록: 별지 제2호서식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①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② 제품명	③ 신청 정보	④ 대체 정보	⑤ 신청요지 · 사유서	⑥ 증빙서류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 관리성	유용성
XXXXXXXX- 00000 (54-2020- #####)	* * * *	등록물질의 명칭	0000000- XXXXXX	사유1	[A-1] [A-2]	[C-1]	[B-1] [B-2] [B-3]	[D-1]
상동	상동	등록물질의 함유량(%)	1-15	사유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작성방법

- ① 양도하는 물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등록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양도하는 물질(혼합물, 단일물질)의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예: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중 ○○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구성성분별 함유량 등)를 기재합니다.
- ④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⑤ 신청정보에 대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①번 항목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목록: 별지 제3호서식

• 등록물질의 명칭에 관한 신청요지·사유서(2-1)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① 일련번호	사유1	②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xxxxxxx-00000 (54-2020- #####)	③ 신청정보	등록물질의 명칭	④ 대체정보	0000000-xxx xxx
-----------	-----	-------------------------	--------------------------------------	--------	-------------	--------	--------------------

⑤ 신청 배경 및 사유 :

제품명 * * * * 는 전자부품 내 기판에 절연성을 부여하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의 특성은 각 구성물질 종류와 함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동종업계에서는 각 구성물질의 종류와 함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요소이기에 각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물질은 XX품목류의 코팅용도 등 타 용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부품 내 기판에 절연성을 부여하는 용도로는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본 물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당사가 유일하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용도 관련하여 물질의 명칭 및 제품 내 함량이 공개될 경우, 경쟁사는 손쉽게 유사 제품류에 본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당사의 노하우가 유출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등록물질의 명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으로 신청합니다

⑥ 비공지성 :

당사의 연구개발팀에서 전자부품 내 기판에 절연성을 부여하는 제품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XX년부터 다양한 물질을 조사·연구한 결과, 20**년 최적의 기능을 구현하는 본 등록물질과 그 구성비율을 발견하여, 시장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당사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해당 제품내 적용되는 본 등록물질의 명칭 및 함량은 영업비밀로 하고 있으며, 당사 내에서도 연구책임자와 제조공정책임자 및 담당자만 본 등록물질의 명칭 및 함량을 알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번호 : [A-1], [A-2])

⑦ 경제성 :

제품명 * * * * 은 전자부품 내 기판에 절연성을 부여하는 제품이며, 이 제품과 그에 관련된 본 등록물질을 개발할 때까지 여러 가지 제품을 선별해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총 5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증빙서류 번호 : [C-1])

⑧ 비밀관리성 :

본 등록물질에 대하여 회사 내부에서도 고유의 비밀코드를 적용하여 식별하므로 해당 연구팀원 이외에는 본 등록물질의 명칭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서는 "Confidential"로 표시해 관리하고 있고, 전자문서로 기록된 정보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별 ID와 PW를 부여하여,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각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함께 CCTV를 통하여 영업비밀 유출행위 감시 및 회사 내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나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직원은 비밀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업무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번호 : [B-1], [B-2], [B-3])

⑨ 유용성

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자부품 기관용 절연성을 부여하는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미미하나 본 등록물질을 이용하여 절연제 용도에 적용하여 개발한 제품 * * * *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시장점유율은 30%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만일 본 등록물질의 명칭과 함량이 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알려지면 새로운 제품개발로 인한 시장 선점효과가 반감되며 이는 잠재적인 영업상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빙서류 번호 : [D-1])

작성방법

- ① 본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⑤번 항목에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③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②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④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④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⑤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승인신청 정보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와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해당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기재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명칭의 경우라면 해당 물질의 특정 용도를 기재할 수 있으며,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함유량 비율이 물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청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점(비공지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신청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경제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⑧ 신청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비밀관리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신청 정보가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함(유용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등록물질의 함유량에 관한 신청요지·사유서(2-2)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① 일련번호	사유2	②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xxxxxxx-00000 (54-2020- #####)	③ 신청정보	등록물질의 함유량(%)	④ 대체정보	1-15
-----------	-----	-------------------------	--------------------------------------	--------	-----------------	--------	------

⑤ 신청 배경 및 사유 :

제품명 * * * * 는 전자부품 내 기판에 절연성을 부여하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의 특성은 각 구성물질 종류와 함유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동종업계에서는 각 구성물질의 종류와 함유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요소이기에 각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물질은 XX품목류의 코팅용도 등 타 용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부품 내 기판에 절연성을 부여하는 용도로는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본 물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당사가 유일하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용도 관련하여 물질의 명칭 및 제품 내 함유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는 손쉽게 유사 제품류에 본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당사의 노하우가 유출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등록물질의 명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으로 신청합니다

⑥ 비공지성 :

당사의 연구개발팀에서 전자부품 내 기판에 절연성을 부여하는 제품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XX년부터 다양한 물질을 조사·연구한 결과, 20**년 최적의 기능을 구현하는 본 등록물질과 그 구성비율을 발견하여, 시장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당사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해당 제품내 적용되는 본 등록물질의 명칭 및 함유는 영업비밀로 하고 있으며, 당사 내에서도 연구책임자와 제조공정책임자 및 담당자만 본 등록물질의 명칭 및 함유를 알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번호 : [A-1], [A-2])

⑦ 경제성 :

제품명 * * * * 는 전자부품 내 기판에 절연성을 부여하는 제품이며, 이 제품과 그에 관련된 본 등록물질을 개발할 때까지 여러 가지 제품을 선별해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총 5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증빙서류 번호 : [C-1])

⑧ 비밀관리성 :

본 등록물질에 대하여 회사 내부에서도 고유의 비밀코드를 적용하여 식별하므로 해당 연구팀원 이외에는 본 등록물질의 명칭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서는 "Confidential"로 표시해 관리하고 있고, 전자문서로 기록된 정보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별 ID와 PW를 부여하여,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각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함께 CCTV를 통하여 영업비밀 유출행위 감시 및 회사 내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나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직원은 비밀정보관리규정에 따라 업무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번호 : [B-1], [B-2], [B-3])

⑨ 유용성

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자부품 기관용 절연성을 부여하는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미미하나 본 등록물질을 이용하여 절연제 용도에 적용하여 개발한 제품 * * * *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시장점유율은 30%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만일 본 등록물질의 명칭과 함량이 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알려지면 새로운 제품 개발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가 반감되며 이는 잠재적인 영업상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빙서류 번호 : [D-1])

작성방법

- ① 본 승인신청 요지·사유서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④번 항목에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등록번호(등록통지서를 발급받기 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①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②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④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를 대신하여 기재하려는 대체 명칭(환경부 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또는 대체 함유량(예: 28% → 25~30%) 정보를 기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③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⑤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승인신청 정보와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도와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해당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기재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 등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명칭의 경우라면 해당 물질의 특정 용도를 기재할 수 있으며,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함유량 비율이 물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신청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점(비공지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신청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경제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⑧ 신청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비밀관리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신청 정보가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함(유용성)에 관한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부서류 [A-1]제품 * * * * 및 그에 관련된 본 등록물질의 개발기간 및 경위 		
일시	고객사	개발 내용
20XX년 xx월	A사	신규 project A의 0000용 000 요구사항 수집
20XX년xx월-xx월		요구특성 구현 위한 0000 개발
20XX년 xx월-20XX년 xx월		개발된 00와 00 및 000제의 조합 개발
20xx년xx월		시작 test 0차-0차 실시
20xx년xx월-20xx년xx월		기능 향상을 위한 조성 variation
20**년 xx월-xx월		양산 라인 시험
20**년 xx월		개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부서류 [C-1]제품 * * * * 및 그에 관련된 본 등록물질의 개발 비용 산출자료 (배경 설명) <p>1명당 연간 경비 : 00,000 천원 / 인 · 년</p> <p>본 개발에 필요한 인원수 : 0명 / 0년</p> <p>개발 기간 : 0년(20xx/xx~20**/xx)</p> <p>(비용)</p> <p>인건비 : 000,000천원 (000,000천원×0명×0년)</p> <p>시험설비 및 시약 등 : 000,000천원</p> <p>기타 경비 : 000,000천원</p> <p>총 개발 비용 : 000,000천원</p>		
<p>※ 그 밖에 증빙서류로 첨부가능한 사항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부서류 [A-2]## #####주식회사와 고객사와의 비밀보안유지 계약서 첨부서류 [B-1]## #####주식회사 문서관리 규정 첨부서류 [B-2]## #####주식회사 전자정보보존매체관리 규정 첨부서류 [B-3]## #####주식회사 비밀정보관리 규정 및 비밀유지서약서 첨부서류 [D-1]제품 * * * * 의 기술자료 		

○ 승인결정 통지 예시(2-1)

■ [별지 제4호서식]

통지번호 제0000-000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일부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등록번호)		xxxxxxxx-00000(54-2020-#####)		
신청 정보		“화학물질의 명칭”		
결과	구분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일부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승인		
	이유	<p>1) 증빙서류 C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며, 2) 증빙서류 B1, B2의 문서관리 규정 및 전자정보 보존 매체 관리 규정 등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3)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판단되어 유용성이 인정됩니다.</p> <p>그러나 신청인이 4) 비공지성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첨부서류 A1은 신청대상인 제품 및 그에 관련된 등록물질의 개발기간 및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비공지성의 근거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고객사와의 비밀보안유지 계약서 역시 해당 구매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비밀보안유지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비밀보안유지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비공지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공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p> <p>결론적으로 영업비밀의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제외대상 승인신청을 불승인합니다.</p>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의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환경부장관 직인 </p>				

210mm×297mm[백상지 80g/㎡]

부록

부록.1. 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관련 Q&A

화학물질 정보제공 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에 따른 화학물질도 정보제공을 해야 하나요?

- 면제(또는 등록등면제확인)를 받은 화학물질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하나의 물질에 대해 일부는 등록을 신청하고 일부는 면제(또는 등록등면제확인)를 받은 경우라면, 면제(또는 등록등면제확인) 받은 용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른 화학물질도 정보제공을 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조에 해당한다면, 정보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을 진행한 물질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습니까?

- 불순물과 부산물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완료한 물질이더라도 특정한 혼합물 내 불순물 또는 부산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말하는 하위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하위사용자는 화학물질을 양수 또는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직원(또는 종업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위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해성 심사결과의 분류보다 보수적 분류의 내용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52조(벌칙) 2항의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유해성 심사결과가 완료되어 통지된 유해성 정보와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한 유해성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 해당됩니다. 단순 오기로 통지된 내용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고려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지된 유해성 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위사용자에게 정보를 정정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정보제공 방법

유해성 심사결과 통지서의 유해성 분류 내용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유해성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나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정보(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등)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및 유해성심사 통지결과에 따른 유해성정보(분류표시 포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유해성심사결과통지 내용을 별도 기술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혼합물에 대한 정보제공 시 함량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혼합물에서 함량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각 유해성 항목마다 기재된 “혼합물의 분류기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혼합물의 분류기준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합물 그 자체가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지를 판단하여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이, 유해성 위험성 분류가 있지만 혼합물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MSDS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안전정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MSDS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25호서식 대신 별지 제26호서식으로 정보제공을 같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SDS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별지 제25호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MSDS를 제공하는 경우는 별지 제26호서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 서식 작성시 만약 10톤 미만으로 등록을 했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해성정보 작성란에는 해당없음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 유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별지 제26호 서식의 유해성정보란에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해성정보란에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1) 그 외의 내용(등록·신고번호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지 제26호 서식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으며, 2) 그 외의 내용(등록·신고번호 등)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모두 기재한 후 별지 제26호 서식의 제공을 생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하여 정보제공을 완료한 경우에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2021년 1월 16일 이전에 이미 영업비밀로서 해당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정보제공을 완료한 경우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공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에 대해 영업비밀로서 해당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5조에 따라 자료보호 신청하여 수리된 경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자료보호 신청하여 수리결과통지서를 수신하였더라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30호)에 따라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5조에 따른 자료보호와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신청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인 영업비밀 승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화평법 제45조에 따라 자료보호가 된 화학물질은 동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에서 총칭명으로 공개됩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서 승인받은 물질의 정보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공이 제외되고 승인된 대체정보(총칭명)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보호 신청제도는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유해성심사 결과 공개 및 화학물질 정보 공개에서 영업비밀로서 자료가 보호되는 제도이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신청 제도는 공급망내 하위사용자에게 영업비밀로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제품 내 해당 화학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30호)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안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는 화평법 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신청 없이 대체정보로 기재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 내 비공개 승인된 화학물질만 화평법에서도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므로 제품 내 산안법 상 승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비공개 승인 외 다른 법령에서의 영업비밀 승인을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받은 것으로 같음할 수 있나요?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30호)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안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비공개 승인받았을 경우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나, 동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된 경우는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신속하게 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제도 시행(2021년 1월 16일) 전 정보제공한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대해서도 제외대상 승인 후 다시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정보제공을 위반한 것이 되나요?

-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 승인신청 정보(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변경된 정보제공 대상(새로운 유해성 정보, 위해성정보, 용도, 규제정보)이 아니므로 변경된 정보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방법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서류로서 사유별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각 사유 증빙서류로서 별도로 고시된 목록은 없나요? 영업비밀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의 정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이 정의에 해당함을 입증하기에는 주관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고시된 증빙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실무가이드의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인이 최선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 관련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4가지에 대한 증빙서류가 반드시 모두 제출되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사유 중 비공지성에만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만 심의에 문제없도록 제출하여도 승인이 가능한가요?

- 승인신청 관련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며 4가지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통해 모두 입증될 경우에만 승인이 됩니다. 다만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 경제성과 유용성은 상호 관련성이 높은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항목은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이었으나 심의 결과 함유량 정보만 승인조건에 충족된 경우 일부 승인으로 통지되나요?

- 승인신청 항목중 화학물질 함유량은 승인되고 화학물질 명칭은 불승인된 경우 일부승인으로 통지되며 승인통지서에 승인된 항목이 기재됩니다. 승인된 항목은 화학물질안전정보(별지 제25호서식) 또는 MSDS 대상인 경우 MSDS내 3번 구성성분 및 함유량 정보 작성시 승인된 대체정보(함유량 범위)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5조 자료보호 신청시 제출한 총칭명과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시 대체명칭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나요?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시 대체명칭 작성방법과 자료보호 신청시 총칭명 작성 방법은 모두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7호) 별표(총칭명의 명명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신청시 총칭명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시 여러 화학물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경우 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여러개일 경우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30호) 별지제2호서식에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명칭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를 신청 화학물질에 따라 작성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첨부하여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시 하나의 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제품별로 승인신청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제품별로 승인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30호) 별지제2호서식에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명을 기재하고 신청 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명을 제품명 작성항목에 작성합니다. 또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는 신청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기재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영업비밀」 승인 심의기준 해설서

영업비밀 승인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는 거래경쟁상 지위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1. “비공지성”이란 정보가 출판물,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제성”이란 신청인이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비밀관리성”이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정보가 해당 신청인의 종업원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성”이란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객관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의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요건과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6. 영업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경쟁상 지위”와 “기타 정당한 이익”은 나목의 “경제성”과 라목의 “유용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7. “거래경쟁상 지위”란 신청인의 공정한 경쟁관계에서의 지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등에 있어서 다른 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8. “기타 정당한 이익”이란 노하우, 신용 등 신청인의 운영상 이익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승인심의기준

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보호되는 신청인의 이익을 말한다.

[판례]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용성)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및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참조).

[판례] “영업비밀”에 판단에 있어서 종합적 고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영업비밀로서 특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16. 2002마4380 결정)

[참조자료] 외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요건

미국의 경우 ① 신규성, ② 재산성, ③ 비밀성을 요구하고, 독일의 경우 법상 개념 규정은 없지만, 연방최고재판소 판례에서 ① 한정된 범위에의 인지성, ② 비밀유지의사, ③ 가치성을 요구하며, 일본 경우의 부정경쟁방지법은 ① 비밀성, ② 비공지성, ③ 유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록.2.1 “비공지성”에 관한 해설

심의기준상의 “비공지성”

1. “비공지성”이란 정보가 출판물,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정보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비공지성을 상실함
- 일반적으로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서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알려지면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반드시 일반 대중에까지 알려져야 할 필요는 없음
-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지침의 요건상에서는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요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신규성’과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외국례] “신규성(Novelty)” 요건

미국에서는 “당해 정보가 보유자의 관리 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신규성(novelty)으로 설명하면서 “신규성이 전혀 없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질 것이므로 영업비밀은 최소한의 신규성을 내포해야 한다” 하고 있음.

- 우리나라 판례의 경우는 정보의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방법으로서 간행물 등을 예시하고 있지만,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의 비공지성 요건에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게시를 포함하였음

[판례] “비공지성”의 의미

대법원은 “공연히 알려지 않지 아니하고”의 의미에 대하여,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대한 판단 시점은 관련 정보의 비공개 신청자가 비공지성에 대한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여 비공개 신청을 개시한 시점으로 함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보의 비공지성은 상실됨
- 정보가 공지된 지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이외에 외국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도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음

[판례] “비공지성”의 적용 범위

맥주용기에 온도감응장치를 장착하여 병속에 든 맥주에 맛이 가장 좋은 상태를 병에 부착된 표시로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사항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우선적 충동구매를 일으킨다는 마케팅전략을 합한 구체적인 상품판매전략에 관한 영업비밀인 원고의 아이디어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중지, 제조물의 폐기 및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아이디어의 기술적 사항은 이미 일본국 특허청에서 공개된 고안으로 비밀성이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마케팅전략 역시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의 맥주나 음료회사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비공지성” 입증자료 심의 시 고려사항

1. 비공개 신청 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 가. 관련 정보가 해당 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 나. 고용인 및 해당 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2. 비공개 신청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가. 해당 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 나.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3. 비공개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된 여부

부록.2.2 “경제성”에 관한 해설

심의기준상의 “경제성”

2. “경제성”이란 신청인이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경제성” 요건 인정여부는 일반적으로 ① 당해 정보가 처분 가능성이 있고, 처분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당해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인적·물적, 유무형의 노력이 투입되었는지의 여부, ③ 당해 정보가 기업의 경쟁상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제적 가치란 영업비밀 그 자체가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 가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정보 그 자체가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어서 독자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신청자가 주관적으로 비밀로서 소유한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정보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함

[판례] 독립된 요건으로서의 “경제성”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정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라고 판시하면서, 경제성(독립적 경제적 가치성)을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의 하나로서 판단하고 있음(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 16605 판결).

- 정보보유자에 의하여 양도 또는 라이선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경제성” 입증자료 심의 시 고려사항

1. 비공개 신청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 가. 관련 정보를 소유한 해당 업체와 그 경쟁자들에 있어서 관련 정보가 가지는 가치의 내용
 - 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경쟁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와 내용
2. 비공개 신청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부록.2.3 “비밀관리성”에 관한 해설

심의기준상의 “비밀관리성”

3. “비밀관리성”이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정보가 해당 신청인의 종업원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 영업비밀을 소유한 해당 업체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야 함
-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개 신청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인식(관리의사)과 해당 관리업체의 종업원 또는 외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의 객관적 유지(관리능력)가 인정되어야 함
- “비밀관리성”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노력’이란, 관리업체 내부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관리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
- ‘상당한 노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① 해당 정보에 대한 일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고(접근의 제한), ② 접근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유자의 의도에 반하여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가 존재해야 하며(수비의무의 부과), ③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비밀의 특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판례] “상당한 노력”의 의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영업비밀의 존재를 고지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접근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관리주체의 제한성이 인정되어야 함(예를 들어, 일정 직급 이상의 자만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내 자기정보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함에 있어서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해야 할 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비밀정보 보관장소의 출입금지, 비밀자료 보관방법의 지정, 그 파기방법의 지정, 비밀취급자의 지정, 비밀유지의무(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해당 정보를 권한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의 부과 등 관리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어야 함

[판례] “비밀유지의무” 의 의의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서류에 대외비 도장을 찍는다든가, 특정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을 통하여 외부에 대한 관리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고, 그 결과 기업의 관리하는 정보가 “법률상 수비의무(守祕義務)”가 부과되어진 정보인 것으로서도 보유자가 현실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당해정보는 비밀관리성이 없음」으로 판시하고 있음

“비밀관리성” 입증자료 심의 시 고려사항

1. 비공개 신청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해당 업체 내부 및 외부의 동일 산업내에서 알고 있는 자 포함)
 - 가. 관련 정보가 해당 업체의 외부에 알려진 정도
 - 나. 고용인 및 해당 업체와 관련된 다른 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2. 비공개 신청 업체가 신청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내부직원에게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여 및 비밀유지 고용계약 체결, 물리적 보안 조치 여부,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전산환경 마련 등 포함)
3. 비공개 신청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 가. 해당 업체 이외의 자 또는 다른 업체가 관련 정보를 획득 또는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
 - 나.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 여부 및 공지된 정도

부록.2.4 “유용성”에 관한 해설

심의기준상의 “유용성”

4. “유용성”이란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객관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의 영업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의미한다.

- 경제적 유용성의 판단은 관련 정보의 비공개 신청자에 의한 주관적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목적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객관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유용성이 인정되어야 함
-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의미하며, 영업상 활동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의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장래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우도 포함됨
- 계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일회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 유용성을 판단해야 함
- 유용성이 있는 영업비밀은 이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 정보뿐만 아니라, 경비의 절감 또는 손실 발생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극적 정보도 포함됨(제조노하우, 실험데이터, 연구 리포트, 고객명부 등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실패한 연구결과와 같이 부정적 결과가 나온 소극적 정보라도 구체적인 연구 활동에서 향후에 참조 가능한 정보 등)
-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은 정당한 것임을 요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 공서양속에 반해서는 안 됨(유해물질의 사용, 사기행위, 결함상품,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혹은 관계자의 태만, 위법한 사업계획, 이종장부 등에 관한 정보, 기업의 탈세 방법이나 공해물질 비밀방류방법 등)
-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정보로는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등이 있으며, ‘기술상 정보’란, 기술적 know-how, 설계도, 실험데이터, 상품의 성분,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말하고, 영업상 정보란, 고객정보, 수주서, 채산 검토보고서 견적서, 판매 매뉴얼, 상품의 원가 등을 의미하고, ‘경영상 정보’란 고객정보, 제품정보, 기업 자체의 경영전략 정보 등이 해당되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사업자가 특정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당해 사업 내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특히 경쟁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의 유용성을 상실하게 됨

[판례] “유용성”의 기준

일일 생산량이나 월생산량과 관련한 정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는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 소개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04331 판결)

“유용성” 입증자료 심의 시 고려사항

1. 비공개 신청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2. 비공개 신청정보가 해당 관리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 시설, 특정 기술, 기본 사업기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부록.2.5 “거래경쟁상의 지위”와 “기타 정당한 이익”에 관한 해설

심의기준상의 “거래경쟁상 지위”와 “기타 정당한 이익”

6. 영업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경쟁상 지위”와 “기타 정당한 이익”은 나목의 “경제성”과 라목의 “유용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7. “거래경쟁상 지위”란 신청인의 공정한 경쟁관계에서의 지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등에 있어서 다른 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8. “기타 정당한 이익”이란 노하우, 신용 등 신청인의 운영상 이익을 포함하여, 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보호되는 신청인의 이익을 말한다.

- 제7호의 “거래경쟁상 지위”와 제8호의 “기타 정당한 이익”은 상기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비밀 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보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으로, 상기 요건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도 됨
- 특히 영업비밀 요건 중 제2호의 “경제성”판단과 제4호의 “유용성”판단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상으로 중복된다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경제성”판단과 “유용성”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기능을 수행함

[참고] 영업비밀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 제조공정, 제조방법 기타의 생산·관리 공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정보가 경쟁상대 등에 알려져,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원료·연료구성, 설비설계 기타의 제품·생산기술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정보가 경쟁상대 등에 알려져,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참고] 영업비밀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 재료구성의 특정 수치를 예상할 수 있는 함유율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기업의 운영 및 마케팅 전략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특정 시설의 생산량 및 처리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해당 기업의 운영상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연간 생산량에 관한 정보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생산공정의 유형과 특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특정 제품의 생산량과 개별의 해당 제품의 부품혼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공급원료 및 소비원료의 유형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의 화학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특정 시설에서 소비된 공급원료와 특정 공정에 투입된 반응체의 양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공급자의 원료공급전략 및 계획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공급 원료의 양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공정단계의 원료소비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공급원료의 소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공정단계 진행의 비가동 시간 및 운영효율을 추측할 수 있는 공정단계의 중단 일정 및 그 빈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제품 또는 원료의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참고] 영업비밀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제품 또는 원료의 비율을 추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지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제품의 구성상 특성과 같은 민감한 세부 사항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생산공정에서 사용한 재료의 양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공정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공정단계별로 수령한 원료의 양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기타의 생산, 기술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됨에 따라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참고] 영업비밀 침해의 개연성이 낮은 경우

-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공정단위와 설비 및 사용된 기술의 유형에 관한 사항(액화촉매분해, 열촉매분해 등)으로 공개되어도,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낮은 경우
-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설비 및 운영허가의 내용에 포함되는 관리기술, 설비 및 특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어도,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낮은 경우
- 제조자의 마케팅 자료에 의하여 공개되어 있는 기술 및 설비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어도,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낮은 경우
- 제품의 실제 생산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생산능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운영설비의 수 또는 운영시간의 총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어도,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낮은 경우
- 제조공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공정 중 유출가스 및 보충연료의 연소단위 구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어도,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낮은 경우

[참고] 영업비밀 침해의 개연성이 낮은 경우

- 재료구성에 관한 수치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재료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과 빈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어도,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낮은 경우
- 원료 소비 또는 제품의 구성 및 양에 관한 수치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운영상의 세부사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측정 일자, 장소 및 검증 수행에 사용된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어도, 해당 업체의 권리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낮은 경우

부록.3. 영업비밀에 관한 판례 기준 및 영업비밀 관련 판례

영업비밀에 관한 일반적인 판례 기준

요건	내용
비공지성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경제성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비밀관리성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유용성	•객관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의 영업 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

영업비밀 관련 판례

○ 인정 사례

- 비공지성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경화제 생산방법 등이 공지의 것이 아닌 이상 개발 시기나 도입 시기가 오래되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	비공지성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발생에 대한 요건(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판결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당해 업체의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면	비공지성	잉크를 제조함에 있어서 그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하기 위하여 연구실장을 스카우트한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부정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p>그 내용을 알기 곤란한 상태에 있어 비밀성이 있고, 비밀관리를 하여 왔다면, 그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당해 업체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거나,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p>		사례
<p>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p>	<p>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p>	비공지성	
<p>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도6223</p>	<p>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의 <u>영업비밀</u>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u>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u>’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p>	비공지성	<p>-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부품과 원료의 배합비율과 제조공정을 기술한 자료와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재한 자료를 가져간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하고, 위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p>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477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u>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음</u>	비공지성	회로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회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신호를 처리하는 순서와 각 처리단계에서 사용된 소자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공지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317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비공지성	2001.4.19. 회사가 국내 특허 등록한 후 일본과 유럽에서도 특허등록을 받았으나, 회사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얻은 기술적 요소와 설비의 최적화 등 설비적 요소 및 거래처별 환제품 제제 방법 등 영업적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과 같은 -- 최적화 조건에 관한 정보를 특허출원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비공지성 인정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도12828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비공지성	세부적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함

- 비밀관리성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p>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p>	<p>회사가 ‘공정에 따라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현황 및 개선방안, 작업환경측정 현황 및 개선방안, 안전검사 실시 현황, 누출 시 물질배출처리 시스템 현황, 보호구 지급 현황과 개선방안, 근로자 건강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취지의 판결</p>	<p>비밀관리성</p>	<p>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서 해당 사항이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p>
<p>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p>	<p>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스펀 팩 필터의 제조에 필요한 공장설비를 마련하고, 신청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과 유사한 스펀 팩 필터를 본격적으로 제조하여 신청인 회사의 거래처 등에 신청인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p>	<p>비밀관리성</p>	<p>신청인 회사가 가지는 스펀 팩 필터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는 적어도 신청인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 왔던 정보라고 판단함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함</p>
<p>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p>	<p>①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품개발 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 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는 ‘콜라겐 제품 연구개발 자료’와 ② 콜라겐 제품의 주원료로서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고순도 아텔로콜라겐을 일련의 정제 및 무균/제균 공정을 거쳐 제조하는 콜라겐 제조기술(바이오콜라겐 제조기술)과 관련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p>	<p>비밀관리성</p>	<p>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p>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대법원 2008.7.4. 선고 2007도11409</p>	<p>해당하는지 여부</p> <p>인터넷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 이 사건 소스파일들은 외국상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는 피해 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과정, 실제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다시 피해 회사의 이용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피해 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접근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재고·수량·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파일과 회원을 구매경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자동으로 할인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파일 및 피해 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파일 등은 피해 회사의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소스파일이라고 진술(증거기록 805 내지 807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 관리자 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p>	<p style="text-align: center;">비밀관리성</p>	<p>회사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들 자체는 인터넷상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스파일들이 보관되어 있는 회사의 서버는 IP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p>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9652	중장기 전략보고, 사업계획 달성방안, 신규사업 추진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해외사업 진출전략, 비용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한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들로서, 업무담당자 등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oo화학이 당해 연도 경영실적과 투자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신사업확장, 해외기술협력, 신제품개발 투자, 대리점 매출 활성을 위한 금액할인 기준 등을 파악·수립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이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임. 또한 oo화학은 이 사건 파일들 중 제1, 2번 파일에는 비밀문서 표시를 하였고, 정보보호규정과 외부발송 메일관리 요령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정보보호동의서를 받아 두는 등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 dla	비밀관리성	회사는 비밀문서를 표시해두었고, 정보보호규정과 외부발송 메일 관리요령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정보보호동의서를 받아 두는 등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함

- 경제성, 유용성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잉크를 제조함에 있어서 그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하기 위하여 타 회사로 전직하여 타 회사에서 그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 대항한다고 판단	경제적 유용성	이 사건 연구실장을 스카우트한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대법원 2008.7.4. 선고 2007도11409	공개된 소스파일들을 이용 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 이 사건 소스파일들은 외국상품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업체라는 피해 회사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 회사에서의 영업회의 과정, 실제시행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여 다시 피해 회사의 이용 목적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제작된 점	경제적 유용성	인터넷상 어느정도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목적에 맞게끔 수정·조합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을 인정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경제적 유용성	회사가 고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한 000에는 해외영업망 구축에 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의 취득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노동력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 이를 경쟁업체가 입수할 경우 가격 정책 수립 등에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도12828	피해자 회사가 오랜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디브이알 보드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함. 더욱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비밀유지서약을 작성·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회사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씨씨티브이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행위 감시, 연구·개발 사항에 대한 접근 대상자의 통제, 회사 내 컴퓨터에 대한 해킹이나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상당한 노력	경제적 유용성	회사가 오랜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000은 회사가 판매하는 xxx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

판례번호	판결내용	인정사유	비고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스프로그램을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영업비밀 부정 사례

판례번호	판결내용	요건	사유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부정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6도9022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용 미들웨어의 설명서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정 (경제적 유용성)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지방법원 1997. 2.14. 선고 96가합7170 판결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원고가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고 피고 회사에 이를 제안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사용된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음	부정 (비공지성)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에 당해 영업비밀이 해외에서 누설되어 버렸다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비공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비공지성의 상실)